

암호화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연구

2024. 12.

박주철 · 김재경 · 박하얀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주철 세정연구팀장

공동연구원

김재경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2급

박하얀 세정연구팀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암호화자산 활용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	3
1. 암호화자산의 정의 및 현황	4
가. 암호화자산의 정의 및 범주	4
나. 암호화자산의 유형 및 현황	14
2. 암호화자산의 역외 탈세 위험성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20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20
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 탈세의 위험성	23
다. 자동정보교환체계	26
3. 소결	29
III.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국제적 연혁 및 우리나라의 현황	30
1.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국제적 연혁	30
가. OECD	30
나. EU	35
2. 우리나라 정보교환 관련 국내 법령	39
가. 개관	39
나. 국제조세조정법령	40
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42
라. 특정금융정보법	47
마. 소결	49

IV.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관련 보고서	50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보고서	50
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제1장)	51
나. 보고요건(제2장)	52
다. 실사절차(제3장)	58
라. 정의 규정(제4장)	67
마. 효과적인 이행(제5장)	75
바. CARF MCAA	76
사. CRS와의 상호 보완	77
2. 암호화자산과 조세투명성 보고서	78
가. 서론 및 배경	78
나. CARF의 진행 과정	79
다. 글로벌 포럼의 프레임워크	80
라. CARF의 광범위한 이행을 위한 글로벌 포럼의 작업	82
3. CARF XML 스키마 보고서	83
가. 개요	83
나. CARF XML 스키마 세부 구성	85
4. CARF 이행을 위한 후속 보고서	89
5. 소결	90
V. 해외 주요국의 사례	92
1. 미국	92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92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95
2. 영국	101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101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105
3. 프랑스	107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107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111
4. 일본	113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113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115
5. 국가별 비교	117
VI. 시사점	119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의의	119
2.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시 고려사항	120
참고문헌	125

표 목차

〈표 II-1〉 암호화자산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7
〈표 II-2〉 암호화자산 및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비교	13
〈표 II-3〉 암호화자산의 유형	14
〈표 II-4〉 암호화폐의 종류와 규모	17
〈표 II-5〉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 추진 일지	21
〈표 II-6〉 OECD 공통보고기준(CRS)의 주요 내용	29
〈표 III-1〉 DAC 개정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확대 범위	37
〈표 III-2〉 OECD 및 EU의 정보교환체계 발전 과정	38
〈표 IV-1〉 OECD CARF 보고서의 주요 내용	51
〈표 IV-2〉 OECD CARF 보고요건 중 보고 정보 내용(A항)	53
〈표 IV-3〉 OECD CARF 심사절차	59
〈표 IV-4〉 CARF MCAA	77
〈표 IV-5〉 OECD CARF XML 스키마 구조	85
〈표 V-1〉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에 따른 신고 서식	95
〈표 V-2〉 일본 CARF의 개요	117
〈표 V-3〉 국가별 비교	118
〈표 VI-1〉 CARF와 CRS의 주요 내용 비교	122

그림 목차

[그림 II-1] IMF 암호화폐 개념도	6
[그림 II-2]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9
[그림 II-3]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11
[그림 II-4] 토큰증권의 개념	12
[그림 II-5]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실태조사 주요 결과	19
[그림 II-6]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2023. 4.~2023. 12.)	19
[그림 II-7] 불법주소로 이체된 가상자산 총액(2018~2023년)	24
[그림 II-8]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이를 은닉한 사례	25
[그림 II-9] 2024년 신고자산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26
[그림 III-1]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48

I. 서론

-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온전한 과세는 암호화자산이 가지는 내재적 성질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통제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
 - 한 국가의 과세체계에 불만을 가진 암호화자산 보유자는 다른 과세체계를 가진 국가나 아예 과세체계가 없는 국가로 자산을 이전시키고 있으며, 이전한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손쉽게 거래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현재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해 과세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이미 과세체계를 마련한 국가들 또한 직면하는 문제임

-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한 국가는 자국의 중앙화거래소의 거래자료를 토대로 과세하고 있으며, 자국을 벗어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더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가상자산 기술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등장, 거래유형의 다양화, 탈중앙화거래소의 등장과 같은 요인들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온전한 가상자산 과세체계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여 줌
 - 암호화자산에 대한 과세체계 수립은 한 국가의 과세체계에 의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암호화자산 과세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과세자료의 국가 간 교환, 즉 자동정보교환체계 수립 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 특히 OECD가 발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보고서’와 ‘암호화자산 조세투명성 보고서’를 중심으로 세계

선진국이 가상자산 과세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함

- CARF는 금융기관에 금융계좌정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자동정보교환체계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토대로 유사한 형식으로 체계를 구성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CRS와의 시너지를 누리고자 함

- 아울러 이미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검토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구체적 정책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항들을 짚고자 함

□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암호화자산 과세제도의 정비와 향후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 수립을 위한 새로운 입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우리나라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암호화자산 과세제도를 마련하였으나, 2021년, 202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두 번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다시 한번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에 마련된 암호화자산 과세제도는 세부 정책별 첨예한 논쟁이 있으며, 특히 국제적 정보교환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암호화자산 과세제도 정비와 함께 정보교환체계제도 수립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본 보고서가 기여하기를 바램

Ⅱ. 암호화자산 활용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

- 본 장에서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살펴보기에 앞서, 암호화자산 (Crypto-Asset)의 정의, 특성 및 현황과 암호화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위험성 및 사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함
- 우리나라 및 국제기구의 암호화자산 또는 가상자산의 용어 정의와 의미 파악에 대해 살펴봄
 - 2023년 OECD CARF 보고서 및 우리나라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암호화자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 암호화자산의 의미는 개괄적으로 파악함
- 암호화자산의 특성 및 현황과, 그 특성으로 인한 탈세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 대응책으로서의 자동정보교환체계에 대해 기술함
 - 그간 암호화자산의 특성 및 현황 논의에 있어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맥락에 따라 용어를 적절히 혼용함
 - 오늘날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탈세의 범위도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역외 탈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함

1. 암호화자산의 정의 및 현황

가. 암호화자산의 정의 및 범주

1) 암호화자산의 정의

- ‘Crypto-Asset’을 직역하면 암호화자산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정보교환체계와 관련하여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23년 보도자료에서 CARF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로 소개함¹⁾
 - 「2024년 세법개정안」은 CARF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함) 제36조 등으로 도입하면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암호화자산을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이라고 함²⁾
 - 위 정의 규정을 분설하면, “① 암호화, ② 분산원장, ③ 가치, ④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임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는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함)의 가상자산 및 토큰형 증권³⁾으로 설명하고 있음⁴⁾
- EU는 “암호화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암호화자산의 정의 규정은 분산원장 및 디지털의 개념을 핵심으로 함

1) 기획재정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보도자료, 2023. 11. 10., p. 1.

2)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2024. 7. 25., p. 94.

3) ‘토큰증권(Security Token)’ 또는 ‘증권형 토큰’이라고도 함

4)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보도자료, 2024. 7. 25., p. 54.

II. 암호화자산 활용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 5

- 최근 EU는 암호화자산을 “암호화에 의존하며, 분산원장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토큰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함⁵⁾
 - 지급 토큰(payment tokens)은 교환 또는 지불 수단을 의미함
 - 투자 토큰(investment tokens)은 수익권이 첨부된 것을 의미함
 -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 EU는 2023년 암호화자산시장규정지침(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에서, 암호화자산을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함⁶⁾
 - MiCA는 암호화자산을 ①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s) ②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 ③ 일반 암호화자산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은 그 가치를 화폐 또는 자산에 연동시켜 안정화하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의미함⁷⁾
 - EU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은 양도가능증권을 적용 대상으로, MiCA는 양도가능증권을 제외한 암호화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규제 방식을 이원화하고 있음
 - MiCA의 암호화자산 개념은 분산원장 기술을 중심으로 정의되며, MiFID가 양도가능증권의 개념을 양도성, 유통성, 표준화 등의 속성과 권리의 내용(주식, 사채)을 중심으로 정의한 것과 차이가 있음⁸⁾
- IMF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개념의 층위를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함

5) European Parliament,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https://www.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theme-a-europe-fit-for-the-digital-age/file-crypto-assets-1>, 검색일자: 2024.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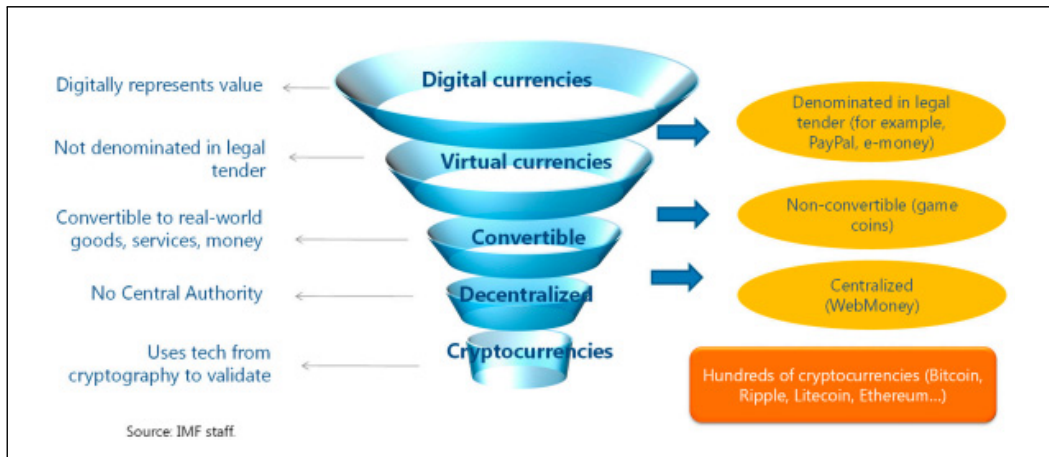
6) EUR-Lex,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Text with EEA relevance),”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114/oj>, 검색일자: 2024. 11. 13.

7) 천창민,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1호, 2022, p. 45.

8) 박영윤, 「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및 시사점」, 『금융법연구』, 제19권 제1호, 2022, p. 125.

- 그림 [II-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암호화폐(crypto currencies)는 가장 좁은 범주의 개념이며,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ies)가 “e-money” 등과 같이 법정화폐를 위한 디지털 지급 체계를 보유하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는 법정화폐로 표시되지 않으며 자체적인 단위를 보유함⁹⁾
-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제도에 암호화(cryptography) 기술을 사용하여 제한된 또는 무제한의 화폐 단위를 발급하며, 대부분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기존의 법정화폐의 표준 개념과는 다르다는 특징을 지님¹⁰⁾

[그림 II-1] IMF 암호화폐 개념도



자료: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2016, p. 8.

-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사한 의미의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왔음
-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용어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투자자산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암호화자산(crypto-asset) 또는 가상자산(virtual asset)과 같이 “자산”으로서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¹¹⁾

9)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2016, p. 7.

10) IMF(2016), p. 9.

〈표 II-1〉 암호화자산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연도	기관	용어	개념 정의
2012	유럽중앙은행 (ECB)	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특정의 가상사회에서 수용·사용하며,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임
2014	유럽은행 감독청 (EBA)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 중앙은행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행되지 않고 법정 화폐에 필연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표상임
2014	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	가상자산 (virtual asset)	• 전자적으로 거래 가능한 교환의 매개·계산의 단위·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전자적 가치의 표현임
2015	유럽중앙은행 (ECB)	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금융기관·전자화폐발행기관에 의해 발행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화폐 대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금전적 가치의 전자적 표상임
2016	국제통화기금 (IMF)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 민간 개발자에 의해서 발행되고 고유 단위에 의해 명명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상임
2018	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	가상자산 (virtual asset)	•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및 이전될 수 있고, 지급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현임
2020	EU 집행위원회	암호화자산 (crypto-asset)	•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임
2020	미국 선물위원회 (CFTC)	디지털자산 (digital asset)	• 가상통화는 비트코인과 같은 교환토큰을 의미하며, 가상통화와 유틸리티 토큰을 포괄하여 디지털 토큰이라 함 • 디지털 토큰과 가상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까지 포괄함
20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디지털자산 (digital asset)	•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하여 발행·이전되는 자산을 통칭함

자료: 김재진·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 2022, pp. 24~30; 85 참고하여 저자 정리

11) 김재진·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 2022, pp. 24~25.

- 이와 같이 암호화자산의 공통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 국제기구는 다양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함
 - OECD에 따르면 암호화자산은 일반적으로 “분산원장 기술”과, 인식되거나 내재된 가치의 일부로서 “암호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의 유형을 지칭하며, 위 두 요소는 모든 암호화자산의 정의에서 필수 요소임¹²⁾
 - IMF, 유럽은행감독청(EBA)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일반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자산을 암호화자산으로 간주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금융 채권·채무 또는 재산권이 아니거나 이를 표상하지 않는 디지털 형태에 기록된 자산만을 암호화자산으로 간주함
 - 대표적인 암호화자산인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이 결여된 점, 실제로 화폐적 기능보다 주로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점, 화폐(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화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때문에 최근 국제적 경향은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¹³⁾

2) 가상자산의 개념

-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준용함¹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함
 -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또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는데,¹⁵⁾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을 염두에 둔 것임¹⁶⁾

12)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p. 9.

13) 고동원,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상사법학연구』, 제31집 제4권, 2018, p. 301.

1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 즉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¹⁷⁾
 - NFT는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하며,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됨¹⁸⁾
 - NFT의 법적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파악해야 하며, 법적 성격의 검토는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②증권이 아닌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순서로 이루어져야 함¹⁹⁾

[그림 II-2]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자료: 금융위원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 6. 11., p. 6.

16) 『법률신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2.,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0046>, 검색일자: 2024. 11. 18.

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18) 금융위원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 6. 11., p. 1.

19) 금융위원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 6. 11., p. 6.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의 개념은 개정 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의 정의 규정과 유사함
-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두었으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의를 규정을 준용함²⁰⁾
 -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의 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2021년 지침의 정의 규정과 유사하며, 이는 FATF의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자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임²¹⁾
- 실무상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법적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으며, 민사소송 실무상 가상자산 자체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함²²⁾
 -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²³⁾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이를 다룸²⁴⁾
 -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판시함
 - 「민사집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한 사례는 있으나,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 압류를 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움²⁵⁾

20)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21) 이소현·박정우,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3권 제1호, 2023, pp. 351~352.

2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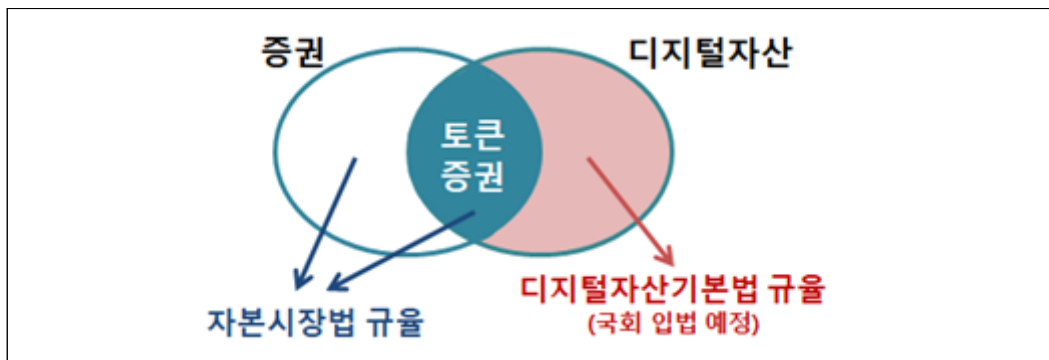
2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24)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 토큰형 증권의 개념

- 202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큰형 증권 또는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함²⁶⁾
 -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임
 - 증권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임
 -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그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음

[그림 II-3]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3. 2. 3., p. 2.

- 토큰증권의 발행, 즉 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허용과 관련하여 이를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여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토큰증권은 그릇에 해당하는 발행 형태이며, 그릇에 음식을 담듯 증권이 이러한 발행 형태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것임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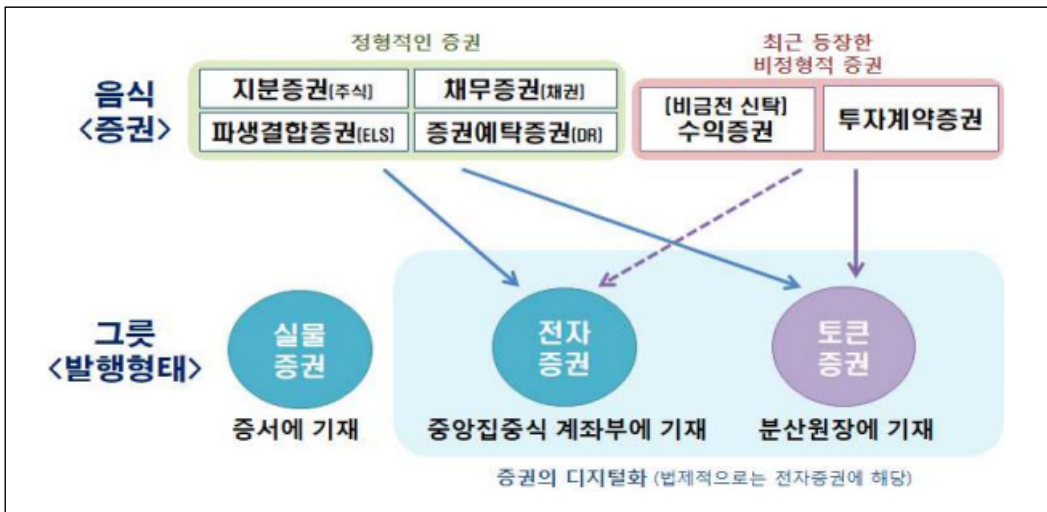
25) 전우정 외, 「가상자산·토큰증권의 담보권 설정 및 선의취득과 파산시 처리 -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小考-」,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1호, 2024, pp. 133~134.

26)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3. 2. 3., p. 2.

27)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3. 2. 3., p. 3.

- 토큰증권은 비금전신탁을 활용하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 가능함
 - 특히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조각투자와 관련한 기본 원칙이 토큰증권에도 적용됨²⁸⁾
 -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²⁹⁾
 - 미국이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의 판단 기준으로 요구하는 “Howey Test”와 유사하게 자본시장법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³⁰⁾

[그림 II-4] 토큰증권의 개념



자료: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3. 2. 3., p. 2.

28)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주로 조각투자 상품 위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하여 발행된 권리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출처: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주)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 보도자료, 2022. 11. 29., p. 3.)
 29)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3. 2. 3., p. 5.
 30) 김병연·권오훈,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미국과 한국의 증권규제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3호, 2021, p. 409.

4) 소결

- 암호화자산 및 관련 용어의 정의와, 가상자산 및 토큰형 증권의 의미를 살펴봄
 - CARF의 암호화자산의 정의 규정은 후술하는 OECD CARF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규정 내의 암호화자산에 대해서만 정보 보고 의무가 발생할 것임
 - 우리나라 CARF 도입 입법안은 가상자산과 토큰형 증권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향후 법령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표 II-2〉 암호화자산 및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비교

암호화자산		가상자산	
우리나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 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 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CBDC,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
OECD CARF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화자산: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 • 관련 암호화자산: “①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 ② 특정 전자화폐 상품, ③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절히 판단한 암호화자산”을 제외한 암호화자산 	-	-

주: 본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CARF 도입과 관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실제 입법안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자료: 본문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암호화자산의 유형 및 현황

1) 암호화자산의 유형

- 암호화자산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 규정은 없으므로 암호화자산의 종류를 구분하는 표준 용어 또한 없으나, OECD는 경제적 기능을 기준으로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s),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의 세 유형으로 구분함³¹⁾
- 암호화자산의 유형 구분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그 범주의 영역은 서로 겹칠 수 있음
- 토큰의 성질 또한 일관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 또는 기술의 발전 주기에 따라 변할 수 있음

〈표 II-3〉 암호화자산의 유형

지불형토큰(가상화폐)	증권형(자산·금융) 토큰	유틸리티(소비자) 토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법정 화폐와 가장 유사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 (발행 정부가 보증) •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치 저장 및 측정 단위로도 사용 가능함 • 주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화폐라고 함 • 예: Bitcoin, Litecoin, E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여 거래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증권(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분류됨 • 예: Spice, tZero, B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용 목적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교환 또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급 또는 바우처로서, 보유자가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증명원으로 작동함 (그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아직 사용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임) • 예: Storj, Basic Attention Token

자료: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p. 11, [Figure 1.2.]

31)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pp. 10~11.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을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토큰증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함³²⁾
 - 가상자산을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라고 정의하고, 국내 가상자산의 주요 유형으로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토큰증권을 제시함
 -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권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임³³⁾
 - “지불형 토큰”은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 결제 수단, 송금 또는 가치 이전을 위해 사용되며,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할 수 없음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임
 - 지침은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과 토큰이 있으며, 코인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나, 토큰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으며 코인을 기반으로 생성된다고 설명함

2) 암호화자산의 특성

- 암호화자산 또는 가상자산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투명성(transparency), 불변성(immut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익명성(anonymity)을 꼽을 수 있음
 - (투명성)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참여자 간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며, 분산원장에서 직접 그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정보가 공유됨³⁴⁾
 - 참여자가 블록에 거래 기록을 함으로써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함³⁵⁾
 - (불변성) 가상자산 거래는 중앙기관 없이 참여자들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고 거래의 데이터 삭제나 위·변조가 어려움³⁶⁾

3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보도자료, 2023. 12. 20., p. 4.

33)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토큰 유형이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함

34) 김범준·김석환,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 과제」, 『사법』, 제1권 제66호, 2023, pp. 8~9.

35) 김기주·이명숙, 「블록체인 기술과 신뢰의 생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7권 제3호, 2022, pp. 84~85.

36) 김기주·이명숙(2022), p. 85.

- 블록들은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는 바로 앞의 블록의 해시(hash)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블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의 모든 블록을 바꾸어야 하므로 수정 및 삭제가 어려움
 - (가용성)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므로, 그중 일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장애 없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³⁷⁾
 - (익명성)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는 거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어 익명성을 특징으로 함³⁸⁾
 - 가상자산의 거래·전송을 위한 소프트웨어, 즉 지갑(wallet)은 공개주소 및 개인 키(private key)를 관리하며 지갑의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음
- 나아가 암호화자산은 무형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회계기준에 따라 체계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산 영역임³⁹⁾
- 빠르고 광범위한 발전, 가치 변동성,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또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 투자자, 외부 감사인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
 - 많은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각 관할권의 회계 및 세무 규제당국에서 암호화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면서, 국가별 회계처리 방식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 중 지불형 토큰에 대해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 판매목적에 따라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힘⁴⁰⁾

37) 김기주·이명숙(2022), p. 85.

38) 김범준·김석환(2023), p. 8.

39) Bloomberg Tax, "Applying Global Accounting and Tax Standards to Cryptocurrenci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46E0A98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lvZdWx0cy8xNmMyNzNiOThjN2U1ZWlyZGNIbW5kM2VjYmRjMGQwMyJdXQ--04440be80042ebf6d317e712d8b1cdbbb914a7ea&bn_news_filter=daily-tax-report&criteria_id=16c273b98c7e5eb2dce2cd3ecbdc0d03&search32=6DFisBMEOD1ootaTcB7_Nw%3D%3DdiagauCrh5LTEvoHWwMkj9OFH8-yUdgtxqDuEvTrghMIPbrMZfvQQchfARrnuuil-aFsOzCNz84AgVFz6ixsGqtW_ALqkYM0dvNbBWzDMcV4%3D, 검색일자: 2024. 11. 12.

4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보도자료, 2023. 12. 20., p. 4.

- 암호화자산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발행, 기록, 이전 및 저장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점차 전통적인 금융 중개인 또는 중앙 관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짐⁴¹⁾
 -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급 제공자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중개인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현재로서 이들은 제한된 규제하에 놓여 있어 규제의 측면에서 여전히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음

3) 암호화자산의 현황

-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종류로는 2024년 시가총액 순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등이 있음
 - 2024년 10월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조 2,600억달러이며, 이더리움은 약 2,007억달러임

〈표 II-4〉 암호화폐의 종류와 규모

(단위: 달러)

암호화폐		가격	시가총액
비트코인(Bitcoin)	BTC	63,601	1조 2,600억
이더리움(Ethereum)	ETH	2,487	2,007억 9천만
테더(Tether)	USDT	1.00	1,196억 7천만
바이낸스 코인(Binance Coin)	BNB	576.28	841억 2천만
솔라나(Solana)	SOL	149.03	699억 6천만
미국 달러 코인(U.S. Dollar Coin)	USDC	0.9999	355억
리플(Ripple)	XRP	0.5412	305억 9천만
도지코인(Dogecoin)	DOGE	0.1138	166억 5천만
톤코인(Toncoin)	TON	5.34	135억 5천만
트론(TRON)	TRX	0.1544	133억 7천만

주: 2024년 10월 7일 기준

자료: Forbes, "10 Best Cryptocurrencies To Invest In November 2024," <https://www.forbes.com/advisor/in/investing/cryptocurrency/top-10-cryptocurrencies/>, 검색일자: 2024. 11. 12.

41)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3.

- 우리나라에서 2024년 11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업체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약 40개임⁴²⁾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증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함⁴³⁾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급서비스업자임⁴⁴⁾

- 우리나라는 2023년 하반기 29개의 가상자산사업자(22개 거래소 및 7개 지갑·보관업자)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⁴⁵⁾
 -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와 시가총액 등이 증가함
 - 가상자산 시장 가격 상승에 따라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일평균 거래규모(24%), 시가총액(53%), 원화예치금(21%)이 증가하였으며, 거래이용자(6%)는 반등함
 - 원화마켓은 신규상장이 증가하고(70%), 코인마켓은 거래 중단이 증가하여(42%), 전체 종목 수는 소폭 감소함(3.5%)
 -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62%)은 높음
 - 2023년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의 추이는 [그림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음

42)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4. 11. 13. 기준)」,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 검색일자: 2024. 11. 21.

4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44)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2024,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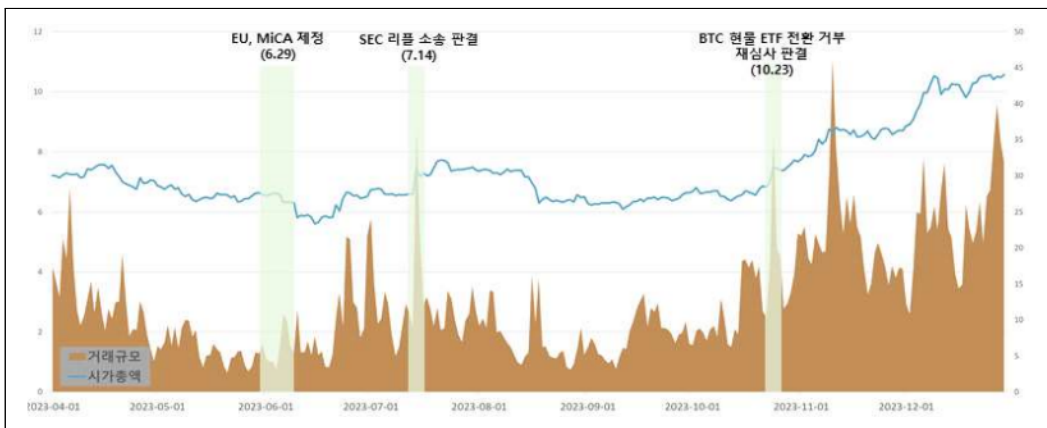
45) 금융위원회,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 5. 16., p. 2.

[그림 II-5]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증감(율)
1.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2.9조원	3.6조원	+0.7조원(+24%)
총영업이익	2,280억원	2,693억원	+413억원(+18%)
원화예치금	4.0조원	4.9조원	+0.9조원(+21%)
2.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28.4조원	43.6조원	+15.2조원(+53%)
가상자산 종목수	1,399개	1,333개	△66개(△4.7%)
- 중복상장 제외시	622종	600종	△22종(△3.5%)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수	366개	332개	△34개(△9.3%)
가격변동성(최고가/최저가)/최고가	62.4%	61.5%	△0.9%p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	606만명	645만명	+39만명(+6.4%)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
1백만원 미만 보유	443만명	455만명	+12만명(+2.8%)

자료: 금융위원회,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 5. 16., p. 1.

[그림 II-6]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2023. 4.~2023. 12.)



자료: 금융위원회,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붙임)」, 보도자료, 2024. 5. 16., p. 1.

2. 암호화자산의 역외 탈세 위험성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국가는 대체로 가상자산을 자산(property)으로 보아 그 수익을 과세하고, 소비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⁴⁶⁾
 -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국가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의 기타 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 ① 채굴(mining), ② 법정화폐나 기타 가상화폐 간 거래, ③ 상품·용역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거나, 자본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일부 소수 국가는 사업활동과 개인적·비정기적 활동을 구분하고, 사업활동은 소득으로 과세하고, 개인적·비정기적 활동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여 국가가 개인 활동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면제됨
 -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나, 일부 국가는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간 거래는 과세 면제하고, 일부는 어떤 유형의 가상화폐 거래도 과세하지 않음
 - 소비세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2015년 EU 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 거래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22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도입했으나 몇 차례 시행 유예를 거쳤음⁴⁷⁾

46) OECD, *Flyer -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pp. 1~2.

47) 「법인세법」 및 「상속및증여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이나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므로 가상자산의 과세소득 분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이미 법령에 도입되어 있음(정승영, 「OECD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 도입과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제40권 제1호, 2024, pp. 268~269.)

- 과세 방식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⁴⁸⁾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임⁴⁹⁾
-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 세법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을 유예함⁵⁰⁾
 - 시행 유예 이유는 CARF의 도입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라고 함⁵¹⁾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의미함⁵²⁾
 - 「2024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에 대해 필요경비 의제를 허용함⁵³⁾(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표 II-5〉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 추진 일지

일자	내용
2020년 7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2022년 가상자산 과세 발표
2021년 12월	국회는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유예
2022년 12월	국회는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2025년으로 유예
2023년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2024년 1월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
2024년 7월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유예

자료: 『경향신문』, 「가상자산 시장 규모 세계 3위인데…미루고 미룬 ‘과세’ 10년 뒤쳐져」, 2024. 9. 3.,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9030600025>, 검색일자: 2024. 11. 14.

4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49)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50)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2024. 7. 25., p. 64.

51) 『경향신문』, 「가상자산 시장 규모 세계 3위인데…미루고 미룬 ‘과세’ 10년 뒤쳐져」, 2024. 9. 3.,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9030600025>, 검색일자: 2024. 11. 14.

52)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53)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2024. 7. 25., p. 65.

- 또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에 대하여 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국세청 기본통칙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⁵⁴⁾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⁵⁵⁾

- 한편 우리나라 법률에 토큰증권과 관련한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 중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함⁵⁶⁾
 -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임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즉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함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2025. 7.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토큰증권의 발행 방식과 관련하여 신탁세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24 세법 개정안」은 위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추어 신탁세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함⁵⁷⁾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신탁의 수탁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납부 의무⁵⁸⁾를 면제함
 - 「소득세법」상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신탁의 이익이 구분되나,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이익은 이러한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함⁵⁹⁾

5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55)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56)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2024. 7. 25., p. 31.

57)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2024. 7. 25., p. 32.

58)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 탈세의 위험성

- 역외 탈세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국내 세법이 적용되는 영역 밖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 등을 은폐하는 행위로서, 단순 절세 또는 조세 전략 (tax planning)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파악할 수 있음⁶⁰⁾
 - 「국세기본법」상의 역외거래 또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⁶¹⁾와 같은 요소가 포함된 납세자의 납세의무 면탈행위가 역외 탈세에 해당함
- 오늘날 탈세는 국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역외 탈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2008년의 일련의 사건들로 점화되었음⁶²⁾
 - 리히텐슈타인 사건은 독일이 2008년 리히텐슈타인의 LGT 은행의 고객명부의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납세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국제적 이슈가 되었음
 - UBS 사건은 2008년 회사 차원에서 미국 고객의 자산을 은닉하고 조세포탈을 조장한 사안으로, 스위스 은행계좌의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통해 관련 정보가 개시됨
- 2024년 국제적인 암호화자산 범죄 동향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불법주소로 이체된 암호화자산 총액은 2022년까지 점차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⁶³⁾
 - 지속적으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스캠(Scam)임
 - 최근 큰 규모를 차지하는 유형은 제재 단체(Sanctioned Entity)로, 2022년 제재

59)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60) 박주철 외,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방안 연구」, 『세정연구』 23-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p. 11.

6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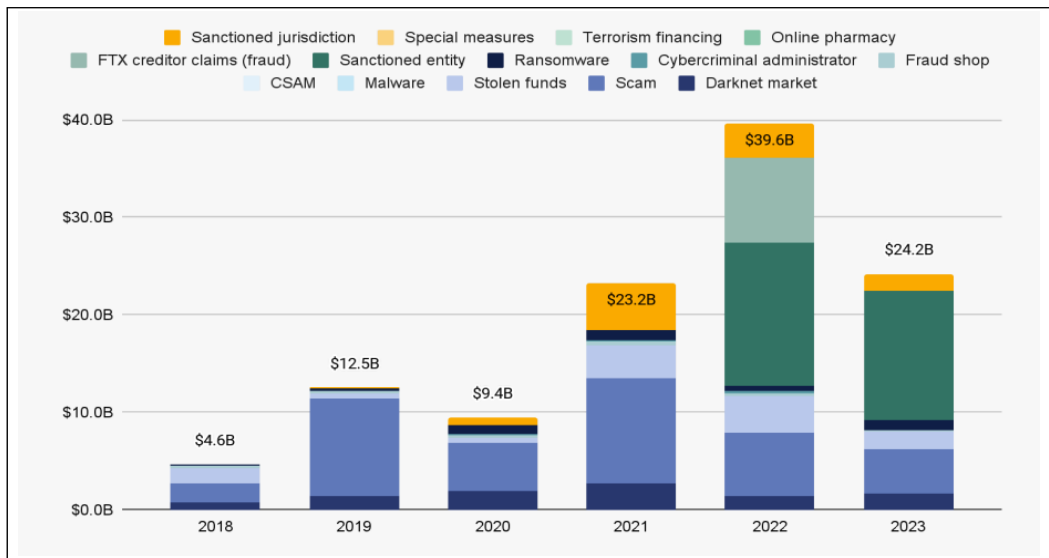
62) 이은미,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조세학술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0, pp. 21~22.

63) Chainalysis, *The 2024 Crypto Crime Report*, 2024., p. 3.

단체 유형의 규모가 커진 이유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제재를 이유로 함⁶⁴⁾

- 제재 관련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진 거래소는 러시아 업체인 Garantax 로, OFAC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

[그림 II-7] 불법주소로 이체된 가상자산 총액(2018~2023년)



자료: Chainalysis, *The 2024 Crypto Crime Report*, 2024.,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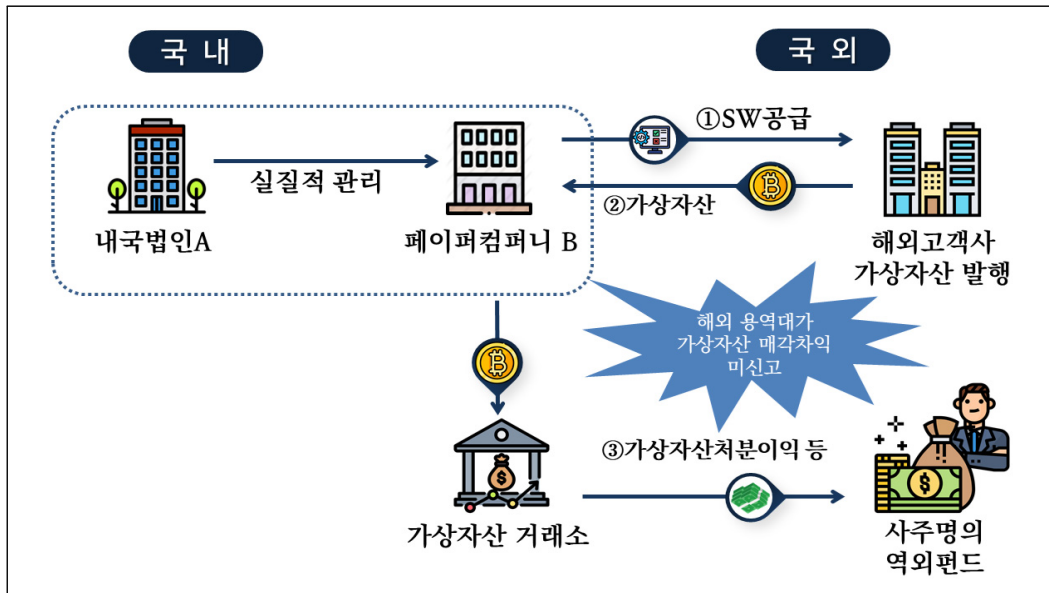
- 특히 암호화자산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암호화자산과 관련하여 해외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⁶⁵⁾
 - 기획재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사업자는 국가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외국환거래법」 개정 또한 추진 중이라고 밝힘⁶⁶⁾

64) Chainalysis, “How 2022’s Biggest Cryptocurrency Sanctions Designations Affected Crypto Crime,” <https://www.chainalysis.com/blog/how-2022-crypto-sanction-designations-affected-crypto-crime/>, 검색일자: 2024. 11. 19.

65) 『뉴스핌』, 「[정책의속살]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거래규모 절반은 ‘구멍’」, 2024. 6. 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12000309>, 검색일자: 2024. 11. 15.

- 우리나라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를 빼돌리는 등,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됨⁶⁷⁾
 - 국세청은 2024년 역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으로 용역대가를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확인됨
 - 역외 탈세 혐의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 및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매출에서 이를 누락함
 -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도 은닉하였으며, 이러한 혐의 대상자는 9명에 해당함

[그림 II-8]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이를 은닉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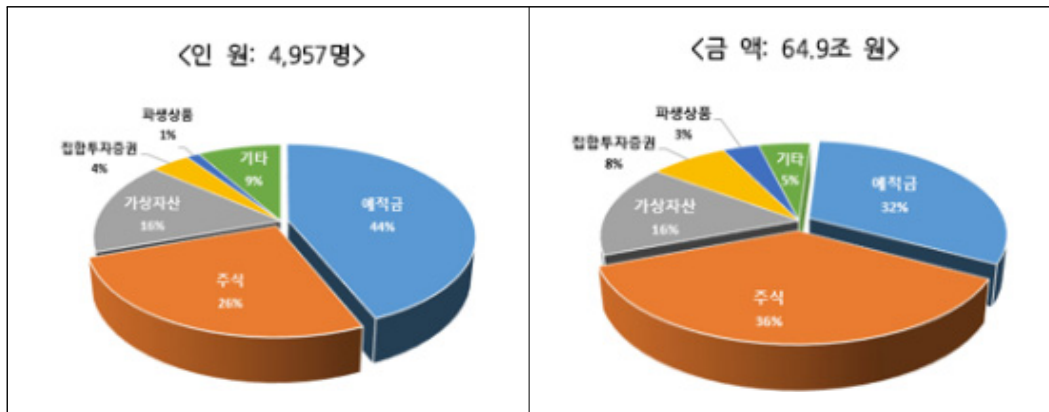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 -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 보도자료, 2024. 7. 2., p. 7.

66) 『한국일보』, 「코인 자금세탁·탈세 막는다... 국가 간 거래 상시 감시」, 2024. 10. 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514450000972>, 검색일자: 2024. 11. 15.

67) 국세청,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 -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 보도자료, 2024. 7. 2., p. 2.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중 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1,432명이 130.8조원을 신고 하였으나, 2024년은 1,043명이 10.4조원을 신고하여, 2023년 대비 92%가 감소함⁶⁸⁾
- 2024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예·적금, 주식,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채권, 보험 등)가 있으며,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함

[그림 II-9] 2024년 신고자산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자료: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보도자료, 2024. 9. 29., p. 6.

다. 자동정보교환체계

- 역외 탈세 또는 조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로서 자동정보교환체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조세 범죄 기타 금융범죄 또한 국가 단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과 국제기구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시간으로 이러한 활동을 단속할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⁶⁹⁾

68)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보도자료, 2024. 9. 29., p. 6.

69) OECD, "Enhancing global collaboration is key in tackling tax crime in the digitalising

- OECD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세피난처를 선정하여 정보교환을 시행하고, 정보교환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였음
- 정보교환 유형에는 CARF에서 채택한 자동정보교환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음
 -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동시 세무조사, 해외세무조사, 산업별 정보교환이 있음⁷⁰⁾
 -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임
 - 자발적 정보교환은 다른 국가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예측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것임
 - 동시 세무조사는 둘 이상의 국가가 공통 사안에 대해 자국 영토 내에서 동시에 각각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임
 - 해외 세무조사는 조사 권한이 있는 자를 직접 파견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것임
 - 산업별 정보교환은 납세자가 아니라 특정 산업 전체에 대한 것임
-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약 180개국에서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FATF 및 회원국의 상호검토 등의 절차를 정기적으로 거치도록 함⁷¹⁾
 -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출범하였으며, 약 37개국과 EU, Gulf Cooperation Council의 2개 국제기구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함

economy.” 2023. 12. 7.,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3/12/enhancing-global-collaboration-is-key-in-tackling-tax-crime-in-the-digitalising-economy.html>, 검색일자: 2024. 11. 15.

70) 변혜정,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의 발전방향과 현안」, 『법학논고』, 제4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pp. 226~229.

71) 금융정보분석원,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https://www.kofiu.go.kr/kor/policy/iois01_1.do, 검색일자: 2024. 11. 14.

- FATF는 “FATF 권고안(FATF Recommendation)”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도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
 -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는 AML/CFT 목적으로 규제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FATF 권고안에서 제안하는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지 감시 및 보장하는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됨⁷²⁾
 - FATF는 위험기반 접근논리에 따라 기술중립성 및 장래 대비라는 관점에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요소만을 규제하고자 함⁷³⁾

- CRS는 성공적인 자동정보교환체계의 도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CARF는 이러한 체계를 확장하여 암호화자산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CRS는 금융자산 보유자에 대한 계좌 정보 등을 금융거래회사 등이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CARF는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 2014년 도입된 CRS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00개의 관할권이 이행 중임⁷⁴⁾

72) FATF, *The FATF Recommendations*, 2023, p. 17.

73) 정승영, 「가상자산의 이용과 조세 포탈에서의 적극적 은닉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조세법연구』, 제28권 제2호, 2022, pp. 225~226.

74)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3. p. 91.

〈표 II-6〉 OECD 공통보고기준(CRS)의 주요 내용

분류		내용
보고대상계좌	개인	모든 계좌
	법인	기존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 모든 계좌
보고대상 정보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보고 금융거래회사 등의 이름 및 식별번호, 계좌 잔액, 지급이자, 배당 등
보고금융거래회사 등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 보험회사 등 (정부단체,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제외)
정보교환 시기		매년 9월까지 이전 연도 말의 정보를 교환
실사의무		보고대상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실사의무는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규정

자료: OECD,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Second Edition*, 2017.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소결

- OECD CARF의 도입을 계기로 하여 기존의 정보교환체계 관련 논의와 암호화자산의 정의, 특성, 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역외 탈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책으로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간략히 논의함
 - 자동정보교환체계와 관련하여 암호화자산은 가상자산 및 토큰형 증권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암호화자산은 탈중앙화 및 익명성 등의 특징을 지님
 - 특히 소득 또는 거래를 역외로 은닉하는 역외 탈세에 암호화자산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또는 보유 자산의 규모 등을 과세관청이 사전에 적절히 포착하는 방식이 유용함
 - 자동정보교환체계는 이미 각 국가 사이에서 협약 등으로 정착되었으므로, 각 과세당국이 암호화자산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수집한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함

Ⅲ.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국제적 연혁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국제적 연혁

가. OECD

- 금융 거래의 발달로 인해 역외 탈세를 통한 조세 회피가 심화되면서, OECD는 1998년 “유해한 조세 경쟁: 현행 국제적 이슈(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요소를 정리함⁷⁵⁾
 - 본 보고서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조세 우대 조치와 조세피난처가 유해한 조세 경쟁을 가져왔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때 조세피난처의 판단 기준을 ① 과세의 부재 및 명목적 과세 ② 세무 행정의 투명성 부족 ③ 정보교환의 부재 ④ 실질적 과세 활동의 결여로 제시하고 해당 국가들을 제재하고자 함
 - 그러나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저항으로, 2001년 “유해 사례에 관한 OECD프로젝트(The OECD’s Project on Harmful Practice: The 2001 Progress Report)” 보고서를 통해 조세피난처의 판단 기준을 정보교환 및 투명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축소함
- 이후 OECD는 2002년에는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OECD 모델 조세정보교환모델(OECD 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 이하

75) 이은미, 「역외자산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p. 62~64.

- OECD 모델 TIEA)’을 발표하였으며,⁷⁶⁾ 해당 모델이 2005년 ‘OECD 모델 조세조약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까지 반영됨⁷⁷⁾
- OECD 모델 TIEA는 앞서 언급한 2001년 “유해사례에 관한 OECD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조세피난처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조문으로 구체화함
 - 각국이 조세피난처 국가와 체결하는 TIEA는 이 기준을 따르며, 양 국가는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함
 - 또한 피요청국가는 자국의 과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또한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OECD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이를 기초로 과세정보를 교환함
 - ‘OECD 모델 조세조약’은 ‘OECD 모델 TIEA’의 정보교환 목적의 협정 체결에 더하여, 상호협약의 징수 공조, 그리고 체결국 간의 과세권 배분의 내용까지 담고 있음
 - 또한 2008년 개정된 UN 모델 조세조약에도 정보교환 규정이 2005년 OECD 모델 조세조약과 유사하게 개정됨에 따라, 본 모델이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으로 확립됨
- 이후 OECD는 2014년 자동 정보교환과 관련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을 승인하였으며, CRS의 이행을 위해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이하 MCAA)’의 체결을 진행함
- OECD 및 G20 국가 및 금융 기관들이 2014년 10월 29일 ‘정보 투명성과 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연례회의에서 CRS의 구현을 합의함⁷⁸⁾

76) 이은미(2010), p. 321.

77) 이은미(2011), pp. 65~67.

78)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Automatic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https://www.bmf.gv.at/en/topics/combating-fraud/Automatic-and-International-Information-Exchange.html>, 검색일자: 2024. 11. 1.

- 이를 위해 OECD와 G20은 2014년 7월 15일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 표준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보고서를 통해 CRS 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음
- 2014년 안이 승인된 이후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디지털화가 확대됨에 따라, 포괄적인 검토 후 CRS 개정안과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 등이 포함된 2023년 “세무 관련 자동 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을 발간함⁷⁹⁾
- CRS는 국가 금융 계좌 정보의 자동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 인증 기준으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0년 입법이 완료된 미국의 「외국 계좌 납세의무준수법(FATCA)」⁸⁰⁾과 유사하게 설계됨⁸¹⁾
- 2014년 11월 세무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CRS MCAA의 첫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본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조세와 관련한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해야 함⁸²⁾
 - 2014년 51개 국가가 처음으로 본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24년 5월 현재 123개 국가⁸³⁾가 참여하고 있음
- CRS로 시작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MCAA)은 이후 국가별 보고서나 디지털 플랫폼 수입 등을 자동교환하는 CbC(Country-by Country) MCAA, DPI(Income derived from Digital Platforms) MCAA, MDR(Mandatory Disclosure Rules) MCAA까지 발전해 오고 있음⁸⁴⁾

79)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p. 8,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6/international-standards-for-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in-tax-matters_ab3a23bc/896d79d1-en.pdf, 검색일자: 2024. 11. 1.

80) 관련 내용은 이후 미국 사례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룸

81) 이동규,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5.

82) The Banks,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2017. 11. 5., <https://thebanks.eu/articles/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on-financial-accounts>, 검색일자: 2024. 11. 1.

83) OECD, “Signatur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nd Intended First Information Exchange Date,” 2024. 5. 16.,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tax-transparency-and-international-co-operation/crs-mcaa-signatories.pdf>, 검색일자: 2024. 11. 1.

- CbC MCAA는 국가별보고서(Country-by Country Report)를 자동 교환하는 협정으로, 2016년 1월 31개국과 첫 체결이 이루어진 후⁸⁵⁾ 2024년 10월 22일 현재 105개 국가⁸⁶⁾가 참여하고 있음
- 2022년 11월에는 디지털 플랫폼 수입과 관련한 DPI MCAA와 CRS 회피 규정 및 불투명한 역외 구조 의무 공개와 관련한 MDR MCAA의 첫 협정이 이루어짐⁸⁷⁾
 - DPI MCAA는 2022년 22개 국가가 서명하였으며, 2024년 3월 12일 현재 26개 국가⁸⁸⁾⁸⁹⁾에서 참여하고 있음
 - MDR MCAA는 첫 협정에서 15개 국가가 서명하고 2024년 3월 12일 현재 18개 국가⁹⁰⁾⁹¹⁾가 참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각종 표준은 진화하고 있음

84) Agencia Tributaria, “Automatic exchange of tax information with non-EU countries: a brief guide,” 2023. 10. 16.,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en_gb/normativa-criterios-interpretativos/analisis/2023/octubre/16/intercambio-automatico-informacion-fiscal-paises-guia.html, 검색일자: 2024. 11. 1.

85) Orbitax, “OECD Announces that 31 Countries have Signed Multilateral Agreement for the Exchange of CbC Reports,” 2016. 1. 28., <https://orbitax.com/news/archive.php/OECD-Announces-that-31-Countri-20711>, 검색일자: 2024. 11. 1.

86) OECD, “Signatur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CbC MCAA) and Signing Dates,” 2024. 10. 12.,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tax-transparency-and-international-co-operation/cbc-mcaa-signatories.pdf>, 검색일자: 2024. 11. 1.

87) Orbitax, “Multilateral Exchange Agreements Signed on Income Earned on Digital Platforms and on CRS Avoidance Arrangements and Opaque Offshore Structures,” 2024. 11. 10., <https://orbitax.com/news/archive.php/Multilateral-Exchange-Agreemen-51303>, 검색일자: 2024. 11. 1.

88) 아르헨티나,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89) OECD, “Signatur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Income Derived through Digital Platforms,” 2024. 3. 12.,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tax-transparency-and-international-co-operation/cbc-mcaa-signatories.pdf>, 검색일자: 2024. 11. 1.

90) OECD, “Signatur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Regarding CRS Avoidance Arrangements and Opaque Offshore Structures,” 2024. 3. 12.,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tax-transparency-and-international-co-operation/mdr-mcaa-signatories.pdf>, 검색일자: 2024. 11. 1.

91) 벨기에, 버뮤다, 케이맨제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핀란드, 건지, 아이슬란드, 맨섬, 저지,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영국

- 또한 최근 암호화자산과 관련한 조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OECD는 2022년 11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제정안을 발표함
- 2018년부터 암호화자산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기존의 금융 기관 및 계좌와 마찬가지로 실사 및 보고 의무를 적용하는 CRS의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함⁹²⁾
 - 그러나 금융 기관이 관여되지 않는 암호화자산의 특성상 CRS와는 분리된 별도의 체계가 필요해짐에 따라,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인 CARF를 구축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CARF는 2022년 8월 OECD 재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동해 10월 G20 재무장관회의 회람을 거쳐 11월 OECD 글로벌 포럼에서 제정안을 발표함
 - 그 후 2023년 11월 10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8개 국가⁹³⁾가 CARF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함⁹⁴⁾
 - 2027년 정보 교환 개시 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을 발효하는 등 체계를 이행하려는 참여국의 노력 및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에도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이 밖에도 OECD는 2001년부터 ‘효과적인 조세 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글로벌 포럼 (OECD Global Forum Working Group on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을 조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음⁹⁵⁾

92) 『Daum데일리안』, 「세계 가상자산 2143조원…역외 탈세 막으려면 ‘CARF’ [D:로그인]», 2024. 10. 7., <https://v.daum.net/v/20241007070028522>, 검색일자: 2024. 11. 1.

93)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건지, 저지, 맨섬,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94) 기획재정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보도자료, 2023. 11. 1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429&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4. 11. 1.

95) 변혜정(2014), p. 232.

- 2005년에는 “효율적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입수 가능성 및 신뢰성 기준 (Enabling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Standard)”을 통해 회계 장부 기준을 개발함
- 2009년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에 관한 진행 보고서(Progress Report on the Jurisdictions Surveyed by OECD Global Forum i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x Standard 2009)”를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의 실시 여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국가 목록을 발표한 바 있음⁹⁶⁾
 - 세 그룹의 목록은 화이트 리스트, 그레이 리스트, 블랙 리스트로 나뉘며, 본 리스트의 발표를 통해 금융 관련 정보교환을 반대했던 국가들까지도 해당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함
- 2010년대 중반부터 자동정보교환과 관련한 국제법적 근거와 일관적인 기술적 형식 및 도구, 기준 등을 마련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주의 의무 원칙과 보고 형식, 전송 방식 등을 포함하는 모든 필요한 보호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 본 포럼은 2009년 ‘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EU

- EU는 2003년 「예금 과세 지침」(Council Directive 2003/48/EC)을 통해 이자 지급 관련 정보의 교환에 대해 최초로 규정한 바 있음⁹⁷⁾⁹⁸⁾

96) 이은미(2011), p. 68.

97) Council Directive 2003/48/EC §8, §9

98) European Commissi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direct) taxation in the EU” : Evolution of the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co-operation-and-control/administrative-co-operation-and-mutual-assistance/enhanced-administrative-cooperation-field-direct-taxation_en, 검색일자: 2024. 11. 1.

- 이자 지불 대행인 거주 EU 가입국의 관계 당국은 수익자 거주 EU 가입국의 관계 당국에, 대행인의 이름 및 주소, 이자 지급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함
 - 정보 전달은 지불 대행인 거주국의 세무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이자 지급에 대해 최소 1년에 한 번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후 2013년에는 예금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자 했으나,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반대로 EU 전역 수준으로는 시행하지 못한 바 있음⁹⁹⁾
 - 2013년 4월 룩셈부르크,¹⁰⁰⁾ 2015년 스위스¹⁰¹⁾가 은행 비밀주의를 철폐함에 따라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또한 본 지침은 DAC 개정안인 Directive 2014/107/EU(DAC2)의 일부로 대체되면서 폐지됨
- EU 의회 및 이사회(EU Parliament and Council)는 2011년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이하 DAC)로 알려진 Directive 2011/16/EU에 합의함¹⁰²⁾
- 본 지침을 통해 EU 가입국의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EOIR)’ 및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과 자발적인 정보 및 피드백 교환을 비롯한 기타 행정 협력 수단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함
 - 직접 과세에 대한 행정 협력과 관련한 EU의 핵심 법령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정을 거듭하여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표 III-1>과 같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23년 8차 개정안인 DAC8에서는 암호화자산 발행업체에 대해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EU 회원국 간 DAC의 범위를 가상화폐

99) 『연합뉴스』, 「EU, 룩셈부르크 등에 은행비밀주의 철폐 촉구」, 2013. 12. 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643348?sid=101>, 검색일자: 2024. 11. 1.

100) 『아시아경제』, 「룩셈부르크 은행비밀주의 철폐 동참」, 2013. 4. 12.,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206243129309>, 검색일자: 2024. 11. 1.

101) 『연합뉴스』, 「EU-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철폐 합의...계좌정보 공유」, 2015. 5. 27., <https://www.yna.co.kr/view/AKR20150527199500098?input=1195m>, 검색일자: 2024. 11. 1.

102) European Court of Auditors, *Audit preview: Exchange of tax information in the EU*, p. 5, https://www.eca.europa.eu/lists/ecadocuments/ap19_14/ap_tax_information.pdf, 검색일자: 2024. 11. 1.

분야까지 확대함¹⁰³⁾

〈표 III-1〉 DAC 개정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확대 범위

개정안	정보 교환 범위 ¹⁾	관련 법령 ¹⁾	시행 연도 ²⁾
DAC1	수입, 연금, 부동산, 로열티 등 소득 정보	2011/16/EU	2015
DAC2	금융 계좌 정보	2014/107/EU	2016
DAC3	세무 관련 결정 사항, 이전 가격	2015/2376/EU	2017
DAC4	국가별(CbC)보고서	2016/881/EU	2017
DAC5	재정 관련 은행 정보	2016/2258/EU	2018
DAC6	과세 계획 모델	2018/822/EU	2020
DAC7 ³⁾	디지털 플랫폼 판매자 정보	2021/514/EU	2024
DAC8 ⁴⁾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	2023/2226/EU	2026

- 자료: 1.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Automatic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https://www.bmf.gv.at/en/topics/combating-fraud/Automatic-and-International-Information-Exchange.html>, 검색일자: 2024. 11. 1.
 2. European Court of Auditors, *Audit preview: Exchange of tax information in the EU*, p. 5, https://www.eca.europa.eu/lists/ecadocuments/ap19_14/ap_tax_information.pdf, 검색일자: 2024. 11. 1.
 3. European Commission, "DAC7,"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co-operation-and-control/administrative-co-operation-and-mutual-assistance/dac7_en, 검색일자: 2024. 11. 1.
 4. Directive 2023/2226/EU §8.6.

□ 이 밖에도 EU는 기구가 별도로 마련한 자동 정보교환 법령상 금융계좌정보 교환 관련 내용과 OECD의 CRS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2014년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위원회 전문가 그룹(Commission AEFI expert group)'을 조직함¹⁰⁴⁾

103)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Automatic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https://www.bmf.gv.at/en/topics/combating-fraud/Automatic-and-International-Information-Exchange.html>, 검색일자: 2024. 11. 1.

104) European Commission, "First Report of the Commission AEFI expert group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14/107/EU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download/e12bc434-389b-4dea-b276-ca3ecca3fb23_en?filename=first_report_expert_group_automatic_exchange_financial_information.pdf, 검색일자: 2024. 11. 1.

- 본 전문가 그룹에는 사업 운영 시 관련 EU 법률을 이행해야 하는 금융 부문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 시민 단체와 같이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 목적으로 하는 모범 거버넌스 및 납세 순응 증진과 관련한 단체들이 포함됨
- 2015년 3월 16일 첫 번째 보고서를 발행하여 DAC2(Directive 2014/107/EU)의 이행과 관련한 주요 미해결 문제들과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권장 사항 및 예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표 III-2〉 OECD 및 EU의 정보교환체계 발전 과정

OECD	EU
1998~2001 - 조세피난처 판단 기준 정리 : 정보교환 및 투명성	...
2002 - OECD 모델 TIEA : 조세피난처 관련 요구 사항 조문화	
...	2003 - EU 예금과세지침 : 이자지급 관련 정보의 교환 규정
2005 - OECD 모델 조세조약 : 상호협약 및 징수 공조, 계약국 간 과세권 배분 내용까지 확대	...
...	2011 - DAC1 합의(2015년 시행) : EOIR 및 AEOI 관련 프레임워크 확립 수입, 연금 등 소득 정보 교환
	2013 - 예금정보 자동교환 제도 시행 : 이후 DAC2로 대체
2014 - CRS(공통보고기준) 승인 - CRS MCAA 체결 시작	2014 - DAC2 합의(2016년 시행) :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

〈표 III-2〉의 계속

OECD	EU
...	2015 - DAC3 합의(2017년 시행) : 세무 관련 결정 사항, 이전 가격 관련 정보 자동 교환
2016 - CbC MCAA 체결 시작	2016 - DAC4 합의(2017년 시행) : CbC 보고서 자동 교환 - DAC5 합의(2018년 시행) : 재정 관련 은행 정보 자동 교환
...	2018 - DAC6 합의(2020년 시행) : 과세 계획 모델 자동 교환
	2021 - DAC7 합의(2014년 시행) : 디지털 플랫폼 판매자 정보 자동 교환
2022 - CARF 제정안 발표 - DPI(디지털 플랫폼 정보) MCAA - MDR(CRS 회피규정 의무 공개) MCAA	...
2023 - CARF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2023 - DAC8 합의(2026년 시행) :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 자동 교환

자료: 본문 내용 저자 정리

2. 우리나라 정보교환 관련 국내 법령

가. 개관

- 우리나라는 2014. 10. 29.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각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에 서명함

- 2014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보교환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CRS의 조기 이행그룹으로 2017년부터 정보교환 이행 공동성명에 참여함¹⁰⁵⁾
- 한편 2015. 6.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하 'FATCA 협정'이라 함)을 체결함
- CRS에 따른 조세 정보의 자동교환이 시행되면 국세청은 각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하여 한국 거주자의 역외금융재산 및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바(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살펴봄

나. 국제조세조정법령

- 우리나라는 CRS MCAA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의 법적 근거를 국제조세조정법에 마련함¹⁰⁶⁾
- 국제조세조정법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당해 규정 위반의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제36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법은 과세당국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 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된 조세 정보를 획득하여 계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과세당국은 조세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제36조 제2항)
 -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른 확인 대상자

105) 이동규,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p. 5~6.

106) 국제조세조정법 제36조 제6항

- 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
-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①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② 법인 또는 단체는 확인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음(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거주자·내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¹⁰⁷⁾를 요청한다면, 관련 당국은 아래의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종사자는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함(국제조세조정법 제36조 제3항)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 체약상대국이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 체약상대국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호¹⁰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금융정보
 -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국제조세조정법 제36조 제5항)
 -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등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징수,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국제조세조정법 제36조 제6항)
 - 금융 거래회사는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제공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거래회

10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함

108) 각호의 사유는 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함

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보유할 수 있음(국제조세조정법 제36조 제6항)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편 국제조세조정법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 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52조 내지 제58조)

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 국제조세조정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9호, 이하 ‘이행규정’이라 함)이 제정되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CRS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이행규정은 정보교환협정¹⁰⁹⁾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세 편, 총 87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이행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는 정보교환협정과 CRS에 부합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회사 등은 정보교환협정과 CRS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정함(제2조)
 - 보고금융거래회사등, 금융거래 상대방, 그 밖의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 등이 이행규정에 따른 실사의무,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약정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약정이나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이 적용됨(제3조)
- ‘금융거래회사등’은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 보험회사를 말함(제4조 이하 참고)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란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국내금융거래회사등을 의미하고(제10조), 여기에서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의 단체¹¹⁰⁾를 말하는바,

109) 정보교환협정은 「조세행정공조협약」,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말함(이행규정 제1조)

신고의무, 실사의무, 보고의무가 없는 단체임

- ① 정부단체, 국제기구, 한국은행, 공공기관(단 수탁기관, 예금기관, 특정보험회사에서 수행하는 유형의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에 대한 것은 제외함)
- ② 다수참여 퇴직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
- ③ 적격신용카드발행인
- ④ 면제 집합투자기구
- ⑤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
- ⑥ 금융거래회사등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 ⑦ 저위험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

□ ‘금융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예금계좌, 수탁계좌, 그리고 다음의 것을 포함함(제12조)

- 투자단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회사등인 단체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으로서 실사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
- 금융거래회사등이 발행 또는 관리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 ‘보고대상계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금융계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를 의미함(제30조)

- 계좌보유자 중 1인 이상이 보고대상인인 금융계좌
-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금융계좌 중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금융계좌

□ ‘계좌보유자’란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그 금융계좌의 보유자로 등록 또는 식별한 자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음(제32조)

110)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단체의 개념과 유형은 이행규정 제11조 참고

- 대리인·관리인·명의자·서명인·투자자문업자·중개인 등으로서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니면서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
- 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① 현금가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 자, ② 계약에서 소유주로 지명된 자 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
 -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
- ‘보고대상인’이란 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 ② 앞서 ①에 따른 법인의 특수관계단체인 법인, ③ 정부단체, ④ 국제기구, ⑤ 중앙은행, ⑥ 금융거래회사를 의미함(제34조)
- ‘증빙자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이행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수취·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아래의 자료를 포함하되 본인확인서는 제외됨(제46조)
 - 계좌보유자등이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류
 -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반드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함)
 - 다음이 모두 포함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공식문서
 - 단체의 이름
 - 단체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본점의 주소 또는 그 단체가 설립·조직된 관할권
 -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
 - 제3자 신용보고서
 - 파산신청서
 - 증권규제기관(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함)의 보고서

-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자료를 포함함)
 - 그 밖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계좌 개설 시 수취하는 정보 또는 이미 보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신고의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2016년 12월 31일과 신규 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제49조)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등이 이행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방해하여 해당 계좌보유자등의 정보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 등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51조)
- (실사의무 개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계좌 중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규정에 다른 실사를 하여야 함(제52조)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사하는데, 본인확인서나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보유자등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함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수취하면서 다음의 사항의 경우, 해당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계좌보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함
 -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이행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 (소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①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관할권 주소, ②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관할권 주소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검토할 수 있음(제55조)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아래의 경우,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함(제56조)
 - 주소검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주소검토를 선택하였으나 본인확인서 또는 정정된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기록검토를 하여야 함(제60조)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에는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정정보 중 일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하지 못한 추정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야 함(제61조)

- (신규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제66조)
 -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 변경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나 증빙자료를 요청함(제67조)

- (기존단체계좌에 대한 실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기존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관련 있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함(제68조)
 -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관할권인임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함

- (신규단체계좌에 대한 실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함(제72조)

- (보고의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에 관한 아래 정보를 보고함(제80조)
 - 보고대상인인 각 계좌보유자(개인) 관련 정보로 ① 성명, ② 주소, ③ 거주관할권, ④ 납세자번호, ⑤ 생년월일
 - 보고대상인인 각 계좌보유자(단체) 관련 정보로 ① 이름, ② 주소, ③ 거주관할권, ④ 납세자번호
 - 1인 이상의 보고대상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
 - 해당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 각 보고대상인인 실질적 지배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 계좌번호(다만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에 따른 증서번호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
 - 계좌잔액(다만 해당 계좌가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해지된 경우 그 해지 사실)
 - 수탁계좌인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
 -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배당 총액,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수탁자·중개인·명의자·그 밖의 계좌보유자를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상환에서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
 - 예금계좌인 경우에는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 수탁계좌 또는 예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채무자로서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적립한 총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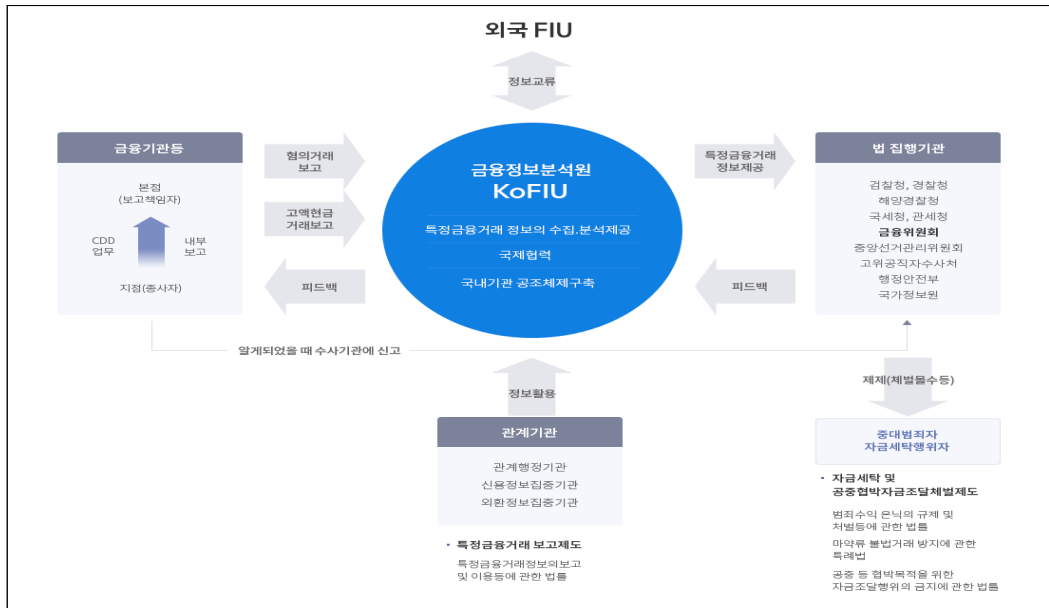
라.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외국 금융정보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류 업무

를 담당함¹¹¹⁾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의심 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외국 금융정보기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함¹¹²⁾ -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시행 중임¹¹³⁾
- 특정금융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함¹¹⁴⁾

[그림 III-1]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1.do>, 검색일자: 2024. 11. 15.

111)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제1항
 112)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1.do>, 검색일자: 2024. 11. 15.
 113)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
 114)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및 제7조

마. 소결

-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낮은 수준의 간접적 정보를 확보하는 정도로 보임
 -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같은 불법거래에 한하여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외국 금융정보기관과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자동 정보교환 체계에 대한 법제는 정비되어 있지 않음
 - 국제조세조정법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5억원 기준금액에 가상자산 외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과세자료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¹¹⁵⁾

-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국제적 공통보고기준의 마련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 가상자산 및 역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115) 실제 신고된 가상자산 규모가 2023년 130.8조원에서 2024년 10.4조원으로 대폭 감소함

IV.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관련 보고서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보고서

- OECD “조세 문제의 자동정보교환 국제 기준 - CARF 및 2023 CRS 개정(이하 ‘CARF 보고서’라 함)”¹¹⁶⁾은 2023년 조세 문제의 자동정보교환 국제 기준 검토의 일부로서 2022/2023 OECD 재정위원회에 의해 승인됨¹¹⁷⁾
- 암호화자산은 기존 금융자산과 관련된 CRS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정보 교환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정보교환체계를 구성함¹¹⁸⁾
- CARF 보고서는 규정(Rules) 및 주석(Commentar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의 문언을 제시함¹¹⁹⁾

116)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3.

117) ‘조세 문제의 자동정보교환 국제 기준’은 G20의 요청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2014년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OECD 표준 권고안으로 구체화되었음.

118) 정승영(2024), p. 257.

119) CARF 보고서는 CRS의 일부 개정도 포함하고 있음

〈표 IV-1〉 OECD CARF 보고서의 주요 내용

분류		내용
CARF 규정 및 주석	제1장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의 의무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 대상 요건 - 보고 및 실사의무 면제 요건
	제2장	보고요건 - 유형별 보고 정보: 보고대상 사용자 관련 정보,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 정보, 관련 거래에 관한 정보 - 유형별 보고 정보와 관련한 부연 설명
	제3장	실사절차 -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에게 대한 실사절차 - 단체 암호자산 사용자에게 대한 실사절차 - 실사절차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 일반 실사요건의 활용
	제4장	정의 규정 - 암호자산 및 관련 암호자산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 - 관련 거래 - 보고대상 사용자
	제5장	효과적인 이행 - 보고 및 실사절차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의 필요성 언급
CARF MCAA 규정 및 주석		- 주요 개념, 정보 교환의 시기·방법, 규정 준수 협조, 비밀유지 등
CRS 개정 내용의 규정 및 주석		- CRS의 보고 대상 범위에 신규금융자산, 상품 및 중개인을 포함하고 상세한 보고요건을 도입하며, 강화된 실사절차 등의 내용으로 개정함

자료: 저자 정리

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의 의무(제1장)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는 다음과 같으며, 관할권 내 지점을 통해 이루어진 관련 거래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할 ‘보고요건’과 ‘실사절차’ 항목에서 명시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A-1) 관할권에서 과세 목적으로 거주하는 단체(entity) 또는 개인임
 - (A-2)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조직되었으며, 관할권에서 법인격을 갖거나 관할권에 단체의 소득에 관한 세금 신고 또는 관련 정보 보고의 의무가

있는 단체임

- (A-3)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체인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관할권에 과세 목적으로 거주하는 수탁자의 관리를 받음
 - (A-4) 관할권에 본사 및 지점 등 정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단체 혹은 개인임
- 다만 다음의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보고 및 실사의무가 면제됨
- 암호화자산사업자인 개인 혹은 단체가 상대 관할권에서 해당 관할권의 과세 목적 상 거주자라는 이유로 보고 및 관련 절차를 완료함
 - 암호화자산사업자가 (a) 상대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단체이며, (b) 상대 관할권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대 관할권의 세무 당국에 소득과 관련한 세금 신고 또는 관련 정보 보고 의무가 있어 해당 요건을 이미 완료함
 - 암호화자산사업자인 단체가 상대 관할권에서 관리되어 관련 보고 및 실사절차를 상대 관할권에서 완료함
 -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상대 관할권의 지점을 통해 수행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 관할권의 지점에서 이미 보고 및 실사 절차를 완료함
 - 관할권의 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상대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보고 및 실사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통지를 관할권이 지정한 형식으로 관할권에 제출함

나. 보고요건(제2장)

1) 거래 유형별 보고 정보(A항)

- OECD는 각 연도 또는 기타 적절한 보고 기간 동안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보고대상 사용자와 관련하여 보고해야 하는 정보를 보고요건(reporting requirement) A항에서 유형별로 정리함
- A항은 보고 정보를 (1) 보고대상 사용자 관련 정보 (2)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관련 정보 (3) 관련 거래에 관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후 B~G항

을 통해 A항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추가함

- 또한 <표 IV-2>의 정보는 해당 보고 연도 혹은 적절 보고 기간의 종료 시점의 정보여야 하며, 적절 보고 기간은 각 관할권의 규칙에 의해 결정됨

<표 IV-2> OECD CARF 보고요건 중 보고 정보 내용(A항)

분류	보고 정보	내용 상세
A(1) 보고대상 사용자 관련 정보	사용자 이름	-
	주소	-
	거주관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실사절차에 따라 식별한 관할권 • 두 개 이상의 거주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보고대상인의 경우, 보고할 거주관할권은 보고대상인에 대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식별한 모든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인에게 거주관할권(출생지 관할권이 아닌)이 할당한 번호 • 두 개 이상의 거주관할권이 존재하는 보고대상인의 경우 각 국가의 납세자번호 •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을 기재
	출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 한해 작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지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상기 항목 관련 정보와 보고대상인의 상기 항목 관련 정보 및 역할까지 작성
A(2)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	암호화자산사업자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된 정보의 출처를 식별하여 오류 발생 시 이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정보를 요구
	주소	-
	납세자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및 회사 등록번호 또는 글로벌 법인 식별정보(LEI)도 가능함 • 관련 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과 주소만 보고

〈표 IV-2〉의 계속

분류	보고 정보	내용 상세
A(3) 관련 거래에 관한 정보	(a) 관련 전체 암호화자산 유형 이름	-
	(b) 법정통화를 통한 취득 정보	• 총액,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c) 법정통화를 통한 처분 정보	• 총액,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d) 다른 암호화자산을 통한 취득 정보	• 총 공정시장가치,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e) 다른 암호화자산을 통한 처분 정보	• 총 공정시장가치, 총 단위 수 및 관련 거래 수
	(f) 총 공정시장가치,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 건수	-
	(g) 기타 취득 관련 총 공정시장가치, 총 단위 수, 관련 거래 수 및 이전 유형별 할당분	• A(3)(b)와 이후 언급할 D항에 적용되지 않는 보고대상 사용자의 이전 관련 • 이전 유형별 할당분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 자산사업자가 인지하는 경우
	(h) 기타 처분 관련 총 공정시장가치, 총 단위 수, 관련 거래 수 및 이전 유형별 할당분	• A(3)(c)와 이후 언급할 E 및 F항에 적용되지 않는 보고대상 사용자의 이전 관련 • 이전 유형별 할당분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 자산사업자가 인지하는 경우
	(i) 기타 거래 관련 총 공정시장가치 및 총 단위 수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알 수 없는 지갑 주소로 전송한 보고대상 사용자의 이전 건수

자료: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3*, pp. 18~19; 31~35의 내용을 저자 정리

- A(3)(b)부터 A(3)(i) 하위 항목에 따른 정보는 암호화자산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이름은 암호화자산의 전체 이름을 입력해야 함
 -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특정 유형의 암호화자산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코드인 '티커(ticker)'나 약어가 상용되고는 있으나, 보고 시에는 티커나 약어가 아닌 암호화 자산 유형의 전체 이름을 기재해야 함
- A(3)(b) 및 A(3)(c)에 따라 암호화자산을 법정통화로 취득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 “취득”이란 보고대상 사용자가 관련 암호자산을 획득하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함
 - 제3자 판매자나 암호자산사업자 본인으로부터 암호자산을 인수하는 상황 모두를 포함함
 - “처분”은 보고대상 사용자가 암호자산을 양도하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실행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함
 - 제3자 구매자나 암호자산사업자 본인에게 전달되는 상황 모두를 포함함
 - 이때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거래의 법정통화 부분에 대한 실제 정보 없이 보고대상 사용자의 암호자산 이체만 수행한 경우, 이러한 거래는 A(3)(g)나 A(3)(h)에 따라 보고대상 사용자가 전송하거나 전송된 이체로 보고해야 함
 - 또한 A(3)(b) 및 A(3)(c)에 따른 거래의 경우, 암호자산사업자의 거래 수수료는 차감한 금액을 보고함
- 암호자산 간 교환 거래의 경우 A(3)(d) 및 A(3)(e)에 근거하여 보고해야 하나, 이때 판매자에게 이전된 구매자의 암호자산이 지불 수단으로서 지급되었다는 별도의 정보가 없다면 A(3)(g) 및 A(3)(h)에 따른 이전으로 보고해야 함
- 구매자 A가 보유한 암호자산 C로 판매자 B의 암호자산 D를 교환 구매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해당 암호자산 C를 판매자 B의 지갑으로 이전하고, 암호자산 D를 보고대상 사용자인 구매자 A의 오프라인 저장 지갑인 콜드 월렛(cold wallet)으로 이전함
 - 이때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판매된 암호자산 D의 지불이 암호자산 C로 이루어졌다는 실제 지불 관련 정보가 없는 한, 해당 거래를 A(3)(h)에 근거한 기타 거래로 보고해야 함
- A(3)(f)에 따라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를 구성하는 암호자산의 이전은 A(3)(g) 및 A(3)(h)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관련 거래 카테고리 보고해야 함
-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를 제공하는 판매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역시 보고대상 사용자로 간주되어야 함

- 다만 거래 최소 한도인 미화 5만달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A(3)(f)의 대상에서 제외된 암호화자산 이전의 경우 A(3)(g)와 A(3)(h)의 분류하에 보고되어야 함
 - 고객이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상품에 대해 암호화자산으로 결제할 경우 이 거래를 A(3)(f)와 관련하여 보고함
 - 이때 판매자 역시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사용자로 취급하여 해당 거래를 A(3)(g)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이전으로 보고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만약 고객의 거래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경우 A(3)(g)의 판매자에 대한 이전으로 보고할 수 있음
- A(3)(g)와 A(3)(h), A(3)(i)의 이전에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불 또는 수령한 대가가 없는 인수 및 처분을 포함함
 - A(3)(g)와 A(3)(h)와 관련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 대상 사용자에게 보낸 기타 유형의 이체에 대해 시장 가치를 각각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즉 전송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대상 기간 동안 실행된 보고 관련 사항들을 전송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에 대해 실행된 총 공정시장가치, 총 단위 수 및 전송 수를 보고 대상 사용자를 대신하여 표시해야 함
 - 전송 유형으로는 하드 포크로 인해 발생한 에어드롭, 하드 포크 외 원인으로 발생한 에어드롭, 스테이킹에서 파생된 소득, 대출에 대한 지급 및 상환 혹은 관련 수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교환 등이 있음
 - 보고대상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지갑이나 보고하는 다른 사업자의 계정으로 암호화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함
 - 이때 암호화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갑 주소의 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 이전과 관련한 모든 외부 지갑 주소나 이와 동등한 식별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해야 함
 - D항의 법정 통화액 환산 보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후속 요청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2) 보고 정보 관련 부연 사항(B~G항)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RF의 B~G항은 A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나열하고 있으며, 우선 B항에서는 보고대상 사용자의 납세자번호(TIN)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납세자번호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에서 발급되지 아니함
 - 보고대상관할권의 국내법이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에서 발급한 납세자번호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함

- C항에서는 출생지 정보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의무가 존재함을 명시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국내법에 따라 출생지를 확보하여 보고해야 하는 경우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자료원 안에서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이후 D~F항에서는 법정통화의 평가 및 식별과 관련한 권장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음
 - D항에서는 A(3)(b) 및 A(3)(c)의 목적을 위해 지불 또는 수령한 금액은 법정통화로 보고할 것을 권장함
 - 이때 여러 종류의 법정통화로 지급 또는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특정 통화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각 거래 시점마다 환산된 단일 통화로 보고해야 함
 - 예를 들어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거래 시점의 현물 환율을 참고하여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결정한 단일 법정통화로 변환할 수도 있음
 - E항에서는 A(3)(d)부터 A(3)(i)까지 목적상의 공정시장가치 역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관련 거래 시 단일 법정통화로 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함
 - F항에서는 보고되는 정보의 각 금액에 대한 법정통화 식별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

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G항에서는 A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들은 ‘x x/x x’와 같은 형태로 정보와 연관되는 이후 역년까지 포함할 것을 권장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정보 보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관할권의 권한이기는 하나, 해당 일자는 관할권의 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됨

다. 실사절차(제3장)

- 실사절차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보고대상인’을 효율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식별하고자 하는 것임¹²⁰⁾
- ‘암호화자산 사용자’는 실사절차에 따라 식별된 날로부터 ‘보고대상 사용자’로 취급됨
- CARF 규정은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Individual Crypto-Asset User)’와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Entity Crypto-Asset User)’로 구분하여 실사절차의 본인 확인 제도 및 그 유효성 요건을 다룸
- CARF 실사절차는 CRS의 실사절차 및 2019년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2 FATF 권고안”의 AML/KYC 의무를 기초로 하여 개발됨

120) OECD(2023), p. 15.

〈표 IV-3〉 OECD CARF 실시절차

분류		내용
암호자산 사용자가 보고대상인인지 판단	A.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	- 규정 발효 12개월 내에 본인확인서 확보 - 본인확인서의 적합성 확인
	B. 단체 암호자산 사용자	- 단체 보고대상인 판단: 규정발효 12개월 내에 본인확인서 확보 및 본인확인서의 적합성 확인 - 단체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지배자를 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 지배자 확정 및 본인확인 서에 근거
C. 본인확인서의 유효성 요건		-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 지배자 또는 단체 암호 자산 사용자의 서명 또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 한 경우에 유효
D. 일반 실사요건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CRS의 금 융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 CRS의 실시절차 활 용 가능 - 실시절차를 위해 자기 책임으로 제3자 활용 가능 - 정보 보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 안 모든 문서 및 정보 보관 의무

자료: 저자 정리

1)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 실시절차(A항)

-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가 ‘보고대상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절
차가 적용됨¹²¹⁾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이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개
인 암호자산 사용자’ 또는 ‘기존의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와 관계를 설정할
때(일회성 거래 포함),¹²²⁾ 본인확인서를 확보해야 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의 세무상 거주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서를 확보해야 함

121) OECD(2023), p. 19.

122) OECD(2023), p. 38.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AML/KYC 절차¹²³⁾에 따라 수집한 서류 등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본인확인서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기존의 본인확인서가 오류·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와 관련된 상황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본인확인서에 의존할 수 없음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유효한 본인확인서 확보 또는 타당한 설명을 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확인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해야 함
- (본인확인서 확보) 본인확인서는 세무상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¹²⁴⁾
- 다양한 관할권의 국내법은 개인이 재정적으로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함
 - 이러한 요건은 국내 세법에서 포괄적 과세(완전 납세의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할권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관련성을 포함하며, 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예를 들어 외교관 또는 정부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에도 적용됨
 - 일반적으로 거주관할권은 한 개이나, 세무상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확인서에 모든 거주관할권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각 ‘보고대상관할권’과 관련하여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를 ‘보고대상 사용자’로 취급해야 함
 - ‘보고대상관할권’은 납세자가 세무상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관련 정보의 제공은 납세자에게 세법 적용에 관한 정보 안내에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OECD는 이러한 정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123) AML/KYC 절차는 자금세탁방지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따라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 실사절차에서 적용되는 요건을 의미함(OECD(2023), p. 27.)

124) OECD(2023), p. 39.

- (본인확인서의 적합성)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함¹²⁵⁾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AML/KYC 절차 포함), 본인확인서가 오류·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본인확인서의 적합성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세법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분석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음의 사례는 적합성 기준의 적용을 설명함
 - (사례 1)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관계 설정 시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본인확인서에 포함된 거주관할권이 AML/KYC 절차에 따라 수집된 서류에 포함된 주소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서는 오류·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성이 없음
 - (사례 2)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관계 설정 시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본인확인서의 거주지 주소가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가 세무상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있지 않은 경우, 상충되는 정보로 인해 본인확인서는 적합성이 없음

- (본인확인서 적합성 불충족) 본인확인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개인 암호자산 사용자’에게 ‘관련 거래’를 실행하기 전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확보하거나, 적합성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설명 또는 서류를 확보해야 함
 - 본인확인서의 적합성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설명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 관련 관할권 내 교육기관의 학생이며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2) 관련 관할권 내 교육기관의 교사, 연수생 또는 인턴이거나 교육 또는 문화 교류 방문 프로그램 참여자이며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25) OECD(2023), p. 39.

- (3) 관련 관할권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외교직 등에 임명된 외국인
- (4) 관할권 간 이동하는 트럭 또는 기차에서 근무하는 국경 근무자 또는 직원
- 예를 들어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관계 설정 시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본인확인서에 포함된 세무상 거주관할권이 AML/KYC 절차에 따라 수집된 서류의 거주지 주소와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로 적합성을 보완할 수 있음
 -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가 특정 관할권의 외교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할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외교관 여권을 제시한다면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본인확인서의 적합성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설명과 서류를 확보했으므로 적합성 기준이 충족됨
- (본인확인서의 오류 보완) 본인확인서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있거나, 본인확인서에서 누락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본인확인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 실사절차(B항)

-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에 대한 실사절차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두 요건을 확인할 것을 요함¹²⁶⁾
 -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가 ‘보고대상 사용자’인지 확인해야 함
 -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지배자(Controlling Person)를 한 명 이상 보유한 단체이며, 보고제외자(Excluded Person) 또는 능동적 단체(Active Entity)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함
- 첫째,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가 ‘보고대상 사용자’인지 판단함¹²⁷⁾
 - a)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내에

126) OECD(2023), p. 19.

127) OECD(2023), p. 20.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기존의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와 관계를 설정할 때, 본인확인서를 확보해야 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세무상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서를 확보해야 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AML/KYC 절차에 따라 수집한 서류 등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본인확인서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함
-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세무상 거주지가 없는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에 근거하여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거주지를 판단할 수 있음

- b) 본인확인서에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거주지가 ‘보고대상관할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를 ‘보고대상 사용자’로 간주해야 함
 - 단 본인확인서에 근거하여, 또는 보유하거나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여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가 보고제외자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둘째, 단체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지배자를 한 명 이상 보유하는지 판단함¹²⁸⁾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제외자가 아닌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경우에,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본인확인서에 근거하여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가 능동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지배자를 한 명 이상 보유하는지 판단해야 함
- a)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지배자를 확정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2012 FATF 권고안”¹²⁹⁾과 일치하는 AML/KYC 절차에 따라 수집 및 보유하는 정보에 근거할 수 있음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2012 FATF 권고안”에 일치하는 AML/KYC 절차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 지배자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적용해야 함

128) OECD(2023), p. 20.

129)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함

- b)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지 판단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 또는 그 지배자의 본인확인서에 근거해야 함
 - 본인확인서에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배자의 세무상 거주지를 확인하도록 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AML/KYC 절차에 따라 수집한 서류를 포함하여 그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본인확인서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기존의 본인확인서가 오류·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와 관련된 상황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본인확인서에 의존할 수 없음¹³⁰⁾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유효한 본인확인서 확보 또는 타당한 설명을 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확인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해야 함

3) 본인확인서의 유효성 요건(C항)

-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 및 지배자,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본인확인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다룸
-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 또는 지배자가 제공한 본인확인서는 그들이 서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유효함¹³¹⁾
- 늦어도 수령일 기준으로 일자가 기재되고,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 또는 지배자와 관련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a) 성명
 - b) 거주지
 - c) 세무상 거주관할권

130) OECD(2023), p. 20.

131) OECD(2023), p. 21.

- d) 각 보고대상인과 관련하여 각 보고대상관할권과 관련된 납세자번호
 - e) 생년월일
-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가 제공한 본인확인서는 ‘암호화자산 사용자’가 서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유효함¹³²⁾
- 늦어도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자가 기재되고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보유해야 함
- a) 법인명
 - b) 주소
 - c) 세무상 거주관할권
 - d) 각 보고대상인과 관련하여 각 보고대상관할권과 관련한 납세자번호
 - e) 능동적 단체 또는 보고제외자가 아닌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경우, 그 지배자가 본인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각 보고대상인이 단체의 지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AML/KYC 절차에 근거하여 확인되지 않았다면, 각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각 지배자와 관련한 정보¹³³⁾
 - f) 해당하는 경우 능동적 단체 또는 보고제외자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 이상의 두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대상인의 거주관할권이 보고대상인에게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관련 보고대상 관할권의 국내법에 따라 보고대상관할권이 발급한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음¹³⁴⁾

4) 일반 실사요건(D형)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CRS의 금융거래회사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실사절차의 일관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조세 목적으로 이미 수집

132) OECD(2023), p. 21.

133) a) 성명, b) 거주지, c) 세무상 거주관할권, d) 각 보고대상인과 관련하여 각 보고대상관할권과 관련된 납세자번호, e) 생년월일

134) OECD(2023), p. 21.

된 본인확인서가 본 장 제C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본인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음¹³⁵⁾

- 예를 들면 FATCA의 목적으로 국내 보고용으로 수집한 정보가 본 장 제C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본인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음¹³⁶⁾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 장에 제시된 실사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의무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책임임¹³⁷⁾
 - 관할권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국내법 요건에 따라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수집한 문서(본인확인서 포함)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 대리인이 수집한 정보에 의존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은 단일 또는 여러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위한 정보 체계의 일부로서 문서를 보관하고,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다수의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동일한 관련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수의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위한 실사절차 이행을 위해 단일의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제2장에 따라 보고 대상 정보의 보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모든 문서와 정보를 보관해야 함¹³⁸⁾
 - 이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표준 글로벌 포럼’에 따른 보관의무에 상응하기 위한 것임
 - 보관의무가 있는 정보는 ‘가상자산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정보를 의미함

135) OECD(2023), p. 21.

136) OECD(2023), p. 47.

137) OECD(2023), p. 21.

138) OECD(2023), p. 21.

라. 정의 규정(제4장)

- 제4장은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루고 있음
 - CARF 규정에서 제시하는 관련 암호화자산,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관련 거래, 보고대상 사용자, 보고제외자와 관련한 정의 규정 중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제시함
 - CARF 규정 특유의 용어가 아닌 용어, 예를 들어 정부기구, 투자단체, 중앙은행, 금융자산, 현금가치 등의 정의 규정은 생략함

1) 관련 암호화자산

- “암호화자산(Crypto-Asset)”은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함¹³⁹⁾
 -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이란 암호화자산이 가치에 대한 권리를 표창해야 하며, 그러한 가치의 소유권 또는 권리가 디지털 방식으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¹⁴⁰⁾
 - 예를 들어 개인이 가치를 저장하고 결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한 회원 자격, 재산권 또는 기타 절대적·상대적 권리¹⁴¹⁾를 나타내지 않는 암호화폐 기반 토큰은 암호화자산에 해당함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회원자격에 대한 청구권 또는 권리, 재산권 또는 기타 절대적·상대적 권리, 법정통화(Fiat Currency)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으로 디지털 교환할 수 있으면 암호화자산임
 - 암호화자산의 위 정의는 암호화자산의 생성, 보유 및 이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별 요소인 암호화 보안 분산 원장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¹⁴²⁾

139) OECD(2023), p. 22.

140) OECD(2023), p. 49.

141) 증권형 토큰 또는 파생상품 금융자산 및 암호화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정해진 날짜에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계약 또는 권리

- 또한 ‘유사한 기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능적으로 암호화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유사한 조세 관련 위험을 야기하는 기술도 포함할 수 있음
 - 유사한 기술이란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자산 형태로 발행된 파생상품, 특정 NFT 등 전통적인 금융 중개인의 개입 없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보유 및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함
- “관련 암호화자산(Relevant Crypto-Asset)”은 암호화자산 중 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② 특정 전자화폐 상품,¹⁴³⁾ ③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절히 판단한 암호화자산,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¹⁴⁴⁾
-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제한된 위험만을 발생시키는 암호화자산의 세 유형은 CARF 보고 의무에서 제외함¹⁴⁵⁾
- 첫째 유형은 CBDC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은행 또는 통화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정통화로서 기존 은행 계좌에 보관된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함
 - 둘째 유형은 “특정 전자화폐 상품(Specified Electronic Money Products)”으로, 단일 법정통화를 나타내며 규제에 따라 언제든지 동일한 법정통화의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고 다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임
 - 셋째 유형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이는 FATF의 가상자산의 범위 정의 규정과 유사함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모든 디지털 법정통화를 의미함

142) OECD(2023), p. 13.

143)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및 금융 계좌에 보유한 특정 전자 화폐 상품은 CRS의 보고의무 범위에는 포함됨

144) OECD(2023), p. 22.

145) OECD(2023), p. 13.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라는 점에서 관련 암호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 전자화폐 상품(Specified Electronic Money Product)”은 단일 법정통화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함
 - “특정 전자화폐 상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을 의미함
 - 단일 법정통화의 디지털 표현임
 - 지급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 수령에 대해 발행됨
 - 동일한 법정통화에 표시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표시됨
 - 발행인 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결제가 수락됨
 - 발행인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요건에 근거하여 상품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동일한 법정통화의 액면가로 상환 가능함
 - “특정 전자화폐 상품”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다른 자에게 자금 이전이 가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상품은 포함하지 않음
 - 이전하는 단체의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그 상품과 연관된 자금을 그 이전 지시를 받은 후 60일 이상 보유하거나, 지시가 없는 경우 그 상품과 연결된 자금을 자금 수령 후 60일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자금 이전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상품이 아님

2)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는 사업체로서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교환 거래의 상대방 또는 중개자 역할을 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교환 거래를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암호자산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들은 관련 암호자산 및 교환 거래에 접근이 가장 쉬울 것으로 기대됨¹⁴⁶⁾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FATF의 보고의무자(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도 포함되므로, AML/KYC 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의 서류를 검토하고 수집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3) 관련 거래

- “관련 거래(Relevant Transaction)”는 a) 교환 거래, b) 관련 암호화자산의 이전을 의미함
 - “교환 거래(Exchange Transaction)”는 a) 관련 암호화자산 및 법정화폐 사이의 교환, b) 관련 암호화자산의 하나 이상의 형태 간 교환을 의미함
 -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Reportable Retail Payment Transaction)”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상품 또는 용역과 관계되는 관련 암호화자산의 이전임
 - “이전(Transfer)”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동일한 암호화자산 사용자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라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주소나 계좌로부터 또는 그 계좌로 관련 암호화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의미함
 - 나아가 거래 시점에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그 거래가 교환거래인지 판단할 수 없는 거래임¹⁴⁷⁾
 - “법정통화(Fiat Currency)”는 관할권 또는 관할권이 지정한 중앙은행 또는 조폐국이 발행하는 관할권의 공식 통화로, 물리적인 지폐나 또는 동전으로 표상되거나 은행준비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포함한 다른 디지털 형태의 통화로 표상되는 것을 의미함
 - 이 용어는 시중은행의 통화 및 전자화폐 상품(특정 전자화폐 상품)을 포함함
- CARF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거래의 경우 지급하거나 수령한 법정통화 금액이 취득 금액 또는 총 수익금으로 보고될 것이라고 예상함¹⁴⁸⁾

146) OECD(2023), p. 13.

147)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전 유형(예: 에어드랍, 스테이킹에서 파생된 소득, 대출)에 따라 이전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함(OECD(2023), p. 14.)

148) OECD(2023), p. 14.

-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간 거래의 경우, 암호자산의 가치(취득 시)와 총 수익금(처분 시)은 반드시 법정통화로 보고해야 함
 -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암호자산 간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는 두 가지 보고 대상 요소, 즉 (i) 암호자산 A의 처분(처분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보고 대상 총 수익금), (ii) 암호자산 B의 취득(취득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보고 대상 취득 가치)으로 구분됨
- 납세자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의 영역 밖에서 ‘관련 암호자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고 CARF는 이를 가시화하고자 함¹⁴⁹⁾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 또는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지갑으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암호자산 사용자’를 대신하여 관련 암호자산을 전송한 경우 그 단위 수와 총 가격을 보고하도록 함
 - 이 정보로 인해 규정 준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은 기존의 정보교환 채널을 통해 암호자산 사용자와 관련된 지갑 주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고액 거래(예를 들어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를 중심으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 지급 시 ‘관련 암호자산’을 수령하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특정 사례에 대해서도 CARF가 적용됨¹⁵⁰⁾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는 판매자의 고객도 ‘암호자산 사용자’로 취급해야 하며,¹⁵¹⁾ 이를 근거로 거래 가격에 대해 보고해야 함
 - 관련 암호자산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사용되어 관련 암호자산의 처분으로 자본 이득을 실현하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149) OECD(2023), p. 14.

150) OECD(2023), p. 14.

151)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국내 자금세탁 방지 규칙에 따라 그리고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의 효력에 따라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됨

4) 보고대상 사용자

- “보고대상 사용자(Reportable User)”는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암호화자산 사용자를 의미하며, “암호화자산 사용자(Crypto-Asset User)”는 관련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 금융기관 또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대리인, 수탁자, 지명인, 서명인, 투자 고문 또는 중개자로서 다른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 또는 계정을 위해 ‘암호화자산 사용자’로 활동하는 것은 ‘암호화자산 사용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러한 다른 개인 또는 단체가 ‘암호화자산 사용자’로 취급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판매자를 위해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를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당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의 거래 상대방인 고객도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암호화자산 사용자’로 취급해야 함
 - 단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보고대상 소매 결제 거래로 인해 해당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Individual Crypto-Asset User)”는 개인인 암호화자산 사용자이며,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Entity Crypto-Asset User)”는 단체인 암호화자산 사용자임
- “기존 개인 암호화자산 사용자(Preexisting Individual Crypto-Asset User)” 또는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Preexisting Entity Crypto-Asset User)”는 ‘보고하는 암호화자산 사용자’와 과거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이미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단체 암호화자산 사용자임
- “보고대상인(Reportable Person)”은 제외자(Excluded Person)가 아닌 “보고대상 관할권의 인(Reportable Jurisdiction Person)”을 의미함
 - “보고대상관할권의 인(人)”은 보고대상관할권의 세무상 거주자인 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 보고대상관할권에 거주하던 자의 상속인을 의미함

- 이러한 목적으로 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 또는 세무상 거주지가 없는 유사한 법적 기구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관할권의 거주자로 취급됨

- “보고대상관할권(Reportable Jurisdiction)”은 (a) 관할권에 거주하는 보고대상인과 관련하여 제2장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관할권]과 계약 또는 합의가 발효되고, (b) [관할권]이 게시한 목록에 명시된 관할권을 의미함

- “지배자(Controlling Persons)”는 단체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의미함
 - 신탁의 경우 지배자는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 수익자 또는 수익자 그룹 또는 신탁에 대해 최종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다른 자연인을 의미하고, 신탁 이외의 법적 협약(arrangement)의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함
 - “지배자”는 2019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2 FATF 권고안”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

- “능동적 단체(Active Entity)”는 다음 각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단체를 의미함
 - 직전연도 또는 다른 적절한 보고기간의 단체의 총수익의 50% 미만이 수동소득이고 직전연도 또는 다른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단체가 보유한 자산의 50% 미만이 수동소득의 창출을 위해 보유한 자산인 경우
 - 단체의 모든 실질적 활동이 금융기관의 영업이 아닌 거래 또는 영업을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의 발행 주식을 보유(전체 또는 일부)하거나 금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단 단체가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펀드, 레버리지 바이아웃 펀드와 같은 투자펀드로 기능하거나 그러한 회사를 취득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목적의 자본 자산으로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기구로 기능하는 경우는 제외함
 - 단체가 아직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운영 이력이 없으나, 금융기관이 아닌 영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단 단체가 최초 조직된 날로부터 24개월 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체가 지난 5년 동안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기관의 영업이 아닌 영업 활동을 지속하거나 재개 의도로 조직을 재편하는 중인 경우
- 단체가 주로 금융기관이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또는 특수관계단체를 위한 자금 조달 및 헤지(hedge) 거래에 참여하며,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 자금 조달 또는 헤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단 그러한 특수관계단체 그룹이 주로 금융기관의 영업이 아닌 영업 활동에 참여해야 함
- 단체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 거주관할권 내에서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운동 또는 교육 목적으로만 설립·운영되거나,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운영되며 전문조직, 상업조직, 상공회의소, 노동 단체, 농업·원예 조직, 시민 연맹이거나 사회복지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기구인 경우
 - 거주관할권에서 소득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 단체의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해 독점적 또는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또는 회원이 없는 경우
 - 단체의 거주관할권의 적용법 또는 단체의 정식 문서에 따라, 소득 또는 자산이 개인 또는 자선단체가 아닌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분배되거나 그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¹⁵²⁾
 - 단체의 거주관할권의 적용법 또는 단체의 정식 문서에 따라, 단체의 청산 또는 해산 시 모든 자산을 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에 분배하거나 단체의 거주관할권의 정부 또는 하위 정부기구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는 경우

152) 단체의 자선활동, 수행된 서비스의 합리적인 보상 또는 단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로 지급되는 것은 허용됨

5) 보고제외자

- “보고제외자(Excluded Person)”는 (a) 하나 이상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 (b) (a)에 명시된 법인의 특수관계단체(Related Entity), (c) 정부단체, (d) 국제기구, (e) 중앙은행 또는 (f) 제4장 E(5)(b)의 투자단체¹⁵³⁾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의미함

마. 효과적인 이행(제5장)

- 관할권은 앞서 언급한 보고 및 실사절차의 효과적인 준수와 이행을 위해 규정과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함
 - CARF는 관련 암호화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i) 대상 암호화자산의 범위, (ii) 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단체 및 개인, (iii)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 및 그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iv) 암호화자산 사용자 식별을 위한 실사절차 및 관련 관할권의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고자 함
 - 관할권은 CARF 관련 수집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 보고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할권은 실사절차 및 보고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비례적이고 위험에 기반한 종합 전략을 가져야 하며, 다음의 주요 쟁점을 해소해야 함
 - 모든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식별을 보장해야 하며, CARF 규정 제1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적절히 식별하기 위해 특정한 준거점(nexus)이 있는 관할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실사절차 및 보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해야 함

153) 단체가 예금기관, 수탁기관, 특정 보험회사 또는 투자단체에 해당하는 다른 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그 단체의 총소득이 주로 금융상품 또는 관련 암호화자산의 투자, 재투자, 거래에서 기인하는 단체를 의미함.

- 관할권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지정해야 하며, 국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관할권은 CARF 규정 실시절차 및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함
- 나아가 CARF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준수 홍보를 시행해야 함

바. CARF MCAA

- OECD CARF는 개별 관할권이 국내 법률로서 정보교환체계에서 정한 내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도입과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의 다자간 협정(MCAA)을 제안함¹⁵⁴⁾
- 법적 프레임워크에는 정보 교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보 교환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는 행정적 합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관할권은 “조세 문제에 관한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며, 협약 제6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은 상호합의에 따라 당사국이 결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정의된 예측 가능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상호합의할 수 있음
 - CRS에 따르면 이러한 다자간 접근 방식은 관할권이 양자 간 교류 관계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한 교류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율적인 경로임이 입증됨
 - 협약 제6조를 운영하기 위해 관할권은 특히 자동교환 대상 정보, 교환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적 합의도 마련해야 함
 - CARF의 경우 협약 제6조에 근거한 CARF MCAA는 매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세부 방식을 명시하고 있음

154) OECD(2023), pp. 69~89.

- CARF MCAA의 대안으로 관할권은 양자 간 협약 또는 자체적인 정부 간 협약 등을 활용할 수 있음¹⁵⁵⁾
 - 관할권은 양자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자동정보교환을 허용하는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조세 문제에 관한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양자 간 관할권 협약을 통해 자동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자체적으로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보교환 방식과 함께 보고 및 실사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 법률에 의존할 수 있음

〈표 IV-4〉 CARF MCAA

장	내용
1	정의 규정
2	보고대상인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3	정보교환의 시기 및 방식
4	이행 및 집행에 관한 협조
5	비밀유지와 데이터 보호
6	자문 및 개정
7	일반 요건
8	사무국 공조

자료: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3*, pp. 69~89.

사. CRS와의 상호 보완

- CARF는 CRS와 별도의 체계이므로 일부는 CRS 및 CARF 모두에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단체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CRS와 상호보완되도록 함¹⁵⁶⁾
 - CARF는 정보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에 반영된 것처럼 CRS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함

155) OECD(2023), p. 15.

156) OECD(2023), pp. 15~16.

- ‘관련 암호화자산’의 정의에서 특정 전자 화폐 상품과 CBDC는 CRS에 따라 보고되므로 CARF의 범위에서 제외함
- CARF의 ‘관련 암호화자산’과 CRS의 금융자산(Financial Asset)에 모두 해당하는 특정 자산의 경우(예를 들어 암호화 형태로 발행된 주식), CRS는 그 정보가 CARF에 따라 보고되는 경우 CRS 보고의무가 있는 총수익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조항을 두고 있음
- 파생상품 또는 투자기구에 대한 지분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통한 관련 암호화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는 CRS 규정이 적용됨
- 실사절차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CRS 실사절차 규정에 상응하도록 하며,¹⁵⁷⁾ CARF는 CRS가 적용되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에 대해 CRS 절차의 신규 계좌에 대한 실사절차를 허용함

2. 암호화자산과 조세투명성 보고서

가. 서론 및 배경

- OECD는 2024년 7월 “암호화자산의 조세투명성(Bringing Tax Transparency to Crypto-Assets - An Update)” 보고서를 발표함¹⁵⁸⁾
- 보고서는 CARF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CARF의 광범위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도입 배경) 암호화화폐 또는 암호화토큰과 같은 암호화자산은 부를 추적하고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영역 밖에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금융 거래 등을 수행하게 됨

157) 특히 ‘보고의무가 있는 금융기관(Reporting Financial Institution)’에 해당하여 CRS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158) OECD, *Bringing Tax Transparency to Crypto-Assets - An Update*, 2024.

- 암호화자산의 특성은 개인 및 기업 납세자들에게 소득 및 자산을 은닉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음
- 해외 중개인과 같이 해외에서 암호화자산이 보유 및 거래되는 경우 납세의무 회피의 위험이 특히 심각함

나. CARF의 진행 과정

- (G20의 주도) 암호화자산은 조세 투명성의 주요 위험요소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G20 재무장관 및 글로벌 포럼의 주도하에 모색하였으며, 특히 CRS의 성공적인 도입이 있었으므로 이 체계에 기반하여 CARF를 도입하고자 함
 - G20은 지속적으로 CRS의 광범위한 이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포함하여 암호화자산을 통한 조세회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해 왔으며, 동시에 OECD는 CRS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고 있었음
 - 글로벌 포럼의 리스크 태스크포스는 암호화자산의 사용 증가를 조세 투명성과 조세 목적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주요 리스크로 파악함
 - 2021년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언급하였고, 2022년 OECD는 G20과 함께 CARF를 발표함
 - CARF는 금융거래회사등에 비거주 계좌보유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CRS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체계를 비거주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의 신규 중개인인 암호화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 2022년 G20 재무장관회의는 OECD에 CARF 이행 패키지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글로벌 포럼에 광범위한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포럼은 108개의 관할권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18개의 관할권이 근래에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어 CRS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OECD CARF) OECD는 2023년 6월 CARF와 개정 CRS를 발표하였으며, CARF를 추가하기 위해 AEOI의 국제기준과 관련한 권고안 및 CRS를 개정함
 - 글로벌 포럼은 G20의 요청에 따라 2027년부터 CARF 정보교환을 개시하고자 하

는 일부 관할권의 요청에 주목함

- 관할권들은 개정 CRS 및 CARF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2027년까지 정보교환을 개시하기 위해 CARF를 국내법으로 신속하게 입법하고자 함

- CARF는 보고서 발표일 시점에 10개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58개의 글로벌 포럼 회원 관할권이 지지함

다. 글로벌 포럼의 프레임워크

- CRS와 CARF 사이의 시너지를 통해 CARF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할권은 CARF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법적·기술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함
- (국내 법적 프레임워크) 관할권은 국내 입법 절차를 통해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하며, 특히 실사요건을 갖추어야 함
 - 효과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고하는 중개인이 엄격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해야 하므로, CARF에는 보고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실사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 실사요건은 세무상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암호화자산 사용자와, 특정 단체를 통해 암호화자산의 수익적소유권을 보유하는 자를 식별하여, 이들의 거주관할권에 정보를 보고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
 - 관할권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실사 및 보고 규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도록 국내법을 제정하여 과세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CARF를 국내법으로 도입함에 있어 CRS의 접근방식을 반영하고 필요한 실사절차와 일치시켜, CRS를 통해 얻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국제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과세당국은 보고받은 정보를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협약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함

- 과세당국이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보고한 정보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교환 당국과 교환하여 암호자산 사용자의 거주관할권의 과세당국이 해당 자산과 소득이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보교환의 적절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이미 147개국이 서명한 조세문제 상호행정협약(MAAC) 또는 CARF MCAA를 통해서 가능하며, 양자 간 협정과 같은 다른 유형의 교환 협정도 가능함
- (기술적인 프레임워크) 정보 데이터는 CRS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XML 스키마를 활용하고 공통전송시스템(Common Transmission System, CTS)이 사용될 수 있음
-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는 국내 보고에도 사용할 수 있는 CRS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CARF XML 스키마에 따라 준비되어야 함
 - 데이터의 국내 보고와 관련하여 CRS의 경우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AEOI 포털을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포털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정보를 보고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CRS 관할권은 OECD가 마련하고 글로벌 포럼이 관리하는 공통전송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각 관할권에 가장 적합한 방식(예를 들어 '푸시풀(push-pull)' 모델 또는 '시스템 대 시스템(system to system)')으로 양자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엄격한 정보 보안 표준을 준수할 수 있음
 - 공통전송시스템은 CARF를 포함한 모든 국제 기준과 관련하여 조세정보교환에 사용될 수 있음
- (행정 프레임워크) CARF의 요건에 따라 관할권은 모든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의 정보 보고를 점검하고, 그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 활동 등 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갖추어야 함
- 과세당국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가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실제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는 CRS 검증 절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CARF는 새로운 중개인과 새로운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비밀유지 및 데이터 보호) CARF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교환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적절하게 보호된다는 확신이 필요함
 - 글로벌 포럼은 이미 수년 동안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상당한 작업을 수행해 왔음

라. CARF의 광범위한 이행을 위한 글로벌 포럼의 작업

- (CARF 그룹의 작업) CARF 발표 이후, 글로벌 포럼은 관련 관할권에 CARF의 광범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발전시킴
 - “개방형” 그룹을 통해 회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글로벌 포럼의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CARF 그룹은 5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9개의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어 있음
 - 이후로 글로벌 포럼의 CARF 그룹은 글로벌 포럼의 CRS 절차를 시작점으로 하여 CARF 절차를 개시함
 - CARF 그룹은 CRS의 정보교환 개시 절차에서 공통 추진일정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CARF의 공통 추진일정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2027년에 58개국(10개의 개발도상국 포함)이 교환을 개시하기로 함
- (관련 관할권의 식별) 궁극적으로 AEOI는 관련 모든 관할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관련 중개인, 즉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보고 및 실사 의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보고를 우회하기 위한 중개인 또는 투자자들에 의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됨
 - CARF 그룹은 논의 초기 단계부터 이 주제에 주목하였고 암호화자산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 영역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금융 규제에 대항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함

- 2024년 CARF 그룹 총회에서 관련 관할권을 식별하기 위한 접근법 및 절차가 CARF에 도입되어 현재 작업 중임
 - CARF 그룹은 FATF의 중요한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를 보유한 관할권을 식별하는 작업과 글로벌 포럼의 작업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상호 혜택이 가능하도록 함

- (지식의 보급 및 지원) CARF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었으므로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에 관련 지식을 보급하여 관할권이 공통된 해결책을 찾고, 개발도상국이 CARF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는 글로벌 포럼의 주요 목적이었으며, 어느 시점에든 원하는 회원국을 글로벌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포럼을 개방형 그룹으로 만든 이유임
 - CARF 그룹은 CARF의 요소를 습득하고 CRS의 이행을 도모하는 방식을 위해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침의 제공과 지원은 글로벌 포럼의 주된 작업이 될 것임

3. CARF XML 스키마 보고서

가. 개요

- OECD는 2024년 10월 “CARF XML 스키마: 과세당국을 위한 사용자 지침(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XML Schema: User Guide for Tax Administrations, 이하 ‘CARF XML 스키마 사용자 지침’)”을 발표함¹⁵⁹⁾
- 앞선 항목에서 소개한 CARF MCAA와 같이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유관 기관 협정, 혹은 이와 유사한 수단에 근거하여 교환 관계가 성립된 CARF에 따른 유관 기관 간 정보 교환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구조임

159)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XML Schema: User Guide for Tax Administrations*, 2024.

- 본 지침은 스키마를 기반으로 논리적 섹션으로 구분한 특정 데이터 요소와 각 데이터 요소를 설명하는 속성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 OECD의 CARF XML 스키마 사용자 지침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 메시지 헤더(Message Header(MessageSpec)): 보낸 사람, 수신자, 메시지 유형 및 보고 기간을 포함함
 - 기관 당사자 유형(Organisation Party type): 기관과 관련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및 암호화자산 사용자 등을 포함함
 - 개인 당사자 유형(Person Party type): 개인과 관련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및 특정 기관의 암호화자산 사용자를 제어하는 자연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함
 - CARF 본문(CARF Body): 다음의 2개의 하위 섹션으로 구성됨
 - RCASP: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신원과 해당 관할권과의 관련성에 관한 필수 정보를 포함함
 - 암호화자산 사용자(Crypto Users): 보고대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각 데이터 요소의 요구 사항에 해당 데이터가 검증 사항인지 선택 사항인지를 표기해 주어야 함
 - ‘검증’ 요소는 파일의 모든 데이터 레코드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검증’ 요소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검증이 수행됨
 - 발신자는 XML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검사를 수행하여 모든 ‘검증’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파일을 수정해야 함
 - 수신자 또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파일을 거부할 수 있음
 - 아울러 다른 스키마나 특정 요소를 CARF 스키마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정보 교환 시 해당 정보는 이러한 요소는 메시지 헤더의 ‘메시지 유형(Message Type)’ 항목에서 “CARF”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시해야 함

나. CARF XML 스키마 세부 구성

- OECD CARF XML 스키마의 전반적인 구조를 <표 IV-5>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본 표에서는 4단계까지의 필드만을 제시함
- 또한 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어지는 세부 항목 설명에서 4단계 필드의 구성 항목으로서 5단계 필드의 데이터 요소까지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음

<표 IV-5> OECD CARF XML 스키마 구조

필드1	필드2	필드3	필드4
메시지 헤더	전송 업체		
	전송국		
	수신국		
	메시지 유형		
	주의사항		
	발신자 연락처 정보		
	메시지 참조 ID		
	메시지 유형 지표		
	보고 기간		
	시간 표기		
CARF본문	암호자산사업자 정보	암호자산사업자 식별 정보	국가코드
			납세자번호
			추가납세자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개인만)
		관할권 연관성	
		기타 관할권 연관성	
		수정요소	수정 유형
			수정 대상 ID
수정된 ID			

〈표 IV-5〉의 계속

필드1	필드2	필드3	필드4
	암호화자산 사용자 정보	암호화자산 사용자 식별 정보	국가코드
			납세번호
			추가납세자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개인만)
		보고자 정보	국가코드
			납세자번호
			추가납세자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개인만)
		관련 거래	암호화자산 이름
			암호화자산 인수
			암호화자산 처분
			법정통화로 인수
			법정통화로 처분
			지갑 전송
			소매 결제 거래
		수정요소	수정 유형
			수정 대상 ID
수정된 ID			

주: 작성 여부의 선택이 가능한 필드의 경우 셀을 음영 처리함

자료: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XML Schema: User Guide for Tax Administrations*, 2024, pp. 8~4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메시지 헤더(MessageSpec)는 CARF 메시지를 보내는 세무 행정 기관을 식별하며, 메시지가 생성된 시점, 보고서의 보고 기간, 원본·수정·삭제 여부와 같은 특성 등이 명시됨

- ‘전송업체(SendingEntityIN)’ 필드는 국내 보고 시 사용하며, 국내 보고가 의무화된 국가의 경우 각국에서 정의한 식별번호를 입력함
 - ‘전송국(TransmittingCountry)’과 ‘수신국(ReceivingCountry)’은 CARF 메시지를 전송하는 관련 기관의 관할권을 두 자리 알파벳 국가코드로 기재함
 - ‘메시지 유형(Message Type)’에서는 CARF에 따라 교환되는 메시지의 경우 “CARF”로 기재하는 것만이 허용됨
 - ‘주의사항(Warning)’과 ‘발신자 연락처 정보(Contact)’는 자유 텍스트 필드로, ‘주의사항’에는 데이터가 교환되는 문서나 협약의 조건 등 사용에 관한 특정 주의 지침을 기재할 수 있음
 - ‘메시지 참조 ID(MessageRefID)’는 이후 메시지 탐색 시 식별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발신 관할권의 국가 코드, 신고 대상 기간의 연도, 수신 관할권의 국가 코드가 고유 식별 코드 앞에 우선 위치해야 함
 - ‘메시지 유형 지표(MessageTypeIndic)’에서는 해당 정보가 새로운 정보인지 또는 기존에 전송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지 여부를 지정함
 - ‘보고 기간(ReportingPeriod)’에는 메시지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을 표기하며, ‘시간 표기(Timestamp)’에는 메시지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채워짐
- ‘CARF 본문(CARF Body)’ 필드는 크게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정보(RCASP)’와 ‘암호화자산 사용자 정보(Crypto Users)’로 구성됨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정보’ 필드는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정보(RCASP_ID)’와 ‘관할권 연관성(Nexus)’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정보’에는 국가코드(ResCountry Code), 납세자번호(TIN), 이름(Name), 주소(Address)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납세자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납세자번호추가(IN(업체)/IIN(개인))’ 필드를 반복 생성함으로써 모두 기재할 수 있음
 - 납세자번호가 관할권 내에서 발급되지 않았거나 관할권 국내법이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아 보유하지 않는 경우, “NOTIN”으로 입력하여 처리함
 - 또한 개인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BirthInfo)’까지 작성이 요구됨

- ‘관할권 연관성’ 요소에서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관할권의 근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필수 요구 사항은 아님
 - 과세 목적상 거주지, 고정사업장 및 지점 여부, 해당 관할권에서의 관리 여부 등이 이를 통해 식별됨
 -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른 관할권에 동등하거나 더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기타 관할권 연관성(OtherNexus)’ 필드까지 작성할 수 있음
- ‘암호화자산 사용자 정보’ 필드는 ‘암호화자산 사용자 식별 정보(CryptoUser_ID)’, ‘보고자 정보(ControllingPerson)’, ‘관련 거래(RelevantTransactions)’로 구성됨
 - ‘암호화자산 사용자 식별 정보’ 필드는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 정보’와 동일한 구성을 가짐
 - 암호화자산 사용자 본인 외에 해당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 ‘보고자 정보’ 필드를 작성하며, 이러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요소를 반복 생성하여 작성함
 - ‘암호화자산 사용자 식별 정보’ 필드와 작성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법인의 소유권 보유자, 고위 관리직, 신탁의 설립자나 수탁자 여부 등을 표시하는 ‘보고자 유형(CtrlgPersonType)’ 필드가 추가됨
 - ‘관련 거래’ 필드에는 해당 보고기간 동안 각 암호화자산 유형에 대해 사용자가 수행한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됨
 - 암호화자산 이름(CryptoAsset)
 - 암호화자산 간 거래로서 인수(CryptoToCryptoIn) 및 처분(CryptoToCryptoOut): 이때 하위 필드로 교환 유형(스тей킹, 래핑 등), 거래 수, 거래량, 공정시장가치, 통화 코드, 암호화 자산의 인수 및 처분 단위 수 등의 내용을 함께 보고함
 -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의 거래로서 ‘법정통화로 인수(CryptoToFiatIn)’ 및 ‘법정통화로 처분(CryptoToFiatIn)’: 보고 내용은 암호화자산 간 거래와 동일함
 - 암호화자산의 ‘인바운드 전송(CryptoTransferIn)’ 및 ‘아웃바운드 전송(CryptoTransferOut)’: 보고 내용은 암호화자산 간 거래와 동일함
 - 지갑 전송(TransferWallet): 암호화자산사업자나 기타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지갑주소로

보고대상 사용자가 암호화자산을 이체한 경우 해당 정보를 반영하며, 거래량, 공정시장가치, 단위 수를 비롯하여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해당 암호화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방법(장부 가치, 제3자 가치 등)을 사용한 경우 ‘대체 평가(AltValuation)’ 요소까지 작성함

- 소매 결제 거래(RRPT)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이체한 암호화자산의 정보를 반영하며, 거래 건수, 공정시장가치, 통화 코드, 단위 수의 정보를 포함함

- 또한 ‘암호화자산사업자 정보’와 ‘암호화자산 사용자 정보’ 필드에는 ‘수정요소(Doc Spec)’를 두어 데이터 수정을 가능하게 함
 - 하위 필드로 ‘수정 유형(DocTypeIndic)’ 항목을 두어 OECD0~13의 코드를 통해 재전송 데이터, 신규 데이터, 수정된 데이터, 데이터 삭제 등을 지정함
 - 수정이나 삭제가 지정되는 경우 수정이 이루어질 ‘수정 대상 ID(DocRefID)’와 이를 대체할 ‘수정된 ID(CorrDocRefID)’ 항목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4. CARF 이행을 위한 후속 보고서

- OECD는 2024년 11월 “암호화자산의 조세투명성: CARF 이해 및 이행의 단계별 지침(Delivering Tax Transparency to Crypto-Assets: A Step-by-Step Guid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보고서를 발표함¹⁶⁰⁾
 - 보고서는 CARF 이행에 필요한 법적 체계, CARF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IT 프레임워크, CARF 실사의무 및 보고 규칙에 대한 개관을 다룸
- OECD는 2024년 11월 “CARF의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전략 (Capacity-Building Strategy for the Widespread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160) OECD, *Delivering Tax Transparency to Crypto-Assets: A Step-by-Step Guid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4.

of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보고서를 발표함¹⁶¹⁾

- 자동정보교환체계에 기초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CRS와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CRS와 CARF 이행의 공통점을 제시함
- CARF 이행을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일곱 가지 주요 원칙, 통합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모듈식 접근법을 제안함

5. 소결

- 세계화 및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인해 조세 회피 및 범죄 해결에 국제적인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암호화자산 또는 가상자산의 개발 및 활발한 이용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
 - OECD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세 목적의 정보 교환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4년 OECD 조세문제 자동금융계좌정보교환 표준 권고안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획득한 정보를 관할권 간 연례 교환이 가능하도록 틀을 마련하였음
 - 또한 최근 암호화자산의 등장은 조세 투명성 확보의 주요 위험요소로 파악되어 G20 및 OECD는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를 관할권 간 교환하도록 하는 CARF를 도입하고자 함
 - CARF 도입의 배경에는 CRS의 성공적인 도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새로운 투자 및 결제 관행으로 인해 CRS 자체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OECD는 2023년 CARF에 합의한 이후 연이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여, CARF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161) OECD, *Capacity-Building Strategy for the Widespread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4.

- 2023년 ‘CARF 보고서’는 CARF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CARF 규정 및 주석, CARF MCAA의 규정 및 주석, CRS 개정 내용의 규정 및 주석으로 구성됨 - CARF 관련 부분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자산사업자의 의무, 보고요건, 실사절차, 정의 규정, 효과적인 이행”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음
- 2024년 7월 ‘암호자산과 조세투명성’ 보고서는 CARF 도입의 연혁 및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CARF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내·국제·행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2024년 10월 ‘CARF XML 스키마 보고서’는 정보교환을 위해 스키마를 기반으로 데이터 요소 및 데이터 요소를 설명하는 정보로 구성됨
- 2024년 11월 ‘암호자산의 조세투명성: CARF 이해 및 이행의 단계별 지침’은 CARF 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IT 체계를 다루고, 실사의무 및 보고규칙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
- 2024년 11월 ‘CARF의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전략’은 CRS와 CARF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CARF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요구되는 주요 원칙 등에 대해 다룸

V.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미국 IRS는 우리나라의 암호화자산과 같은 가상자산을 「내국세법」 제6045조에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음¹⁶²⁾
 - 디지털자산의 세무 목적상 정의를 ‘암호로 보호되는 분산원장(블록체인)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함
 - 이때 디지털자산에는 ① 비트코인과 같은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② 스테이블 코인 ③ 대체불가능토큰(NFT)이 포함됨¹⁶³⁾
 - ‘디지털자산’은 암호화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등장하였던 첫 지침인 2014년 지침(Notice 2014-21)에서 사용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확대된 개념임
 - 디지털자산은 법정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되며,¹⁶⁴⁾ 전자식으로 보관되어 구매, 판매, 소유, 양도 또는 거래가 허용됨¹⁶⁵⁾
 - 다만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같이 실제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거나 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전환 가능 가상화폐(convertible virtual

162) IRC §6045(g)(3)(D)

163) IRS,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igital-assets>, 검색일자: 2024. 10. 15.

164) IRS Notice 2014-21, Section 4.FAQ (A-1, A-2)

165) IRS,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igital-assets>, 검색일자: 2024. 10. 15.

currency)’라고 칭하며,¹⁶⁶⁾ 과세의 대상 또한 이로 한정함¹⁶⁷⁾

- 전환가능 가상화폐는 ① 상품 및 서비스 결제, ② 디지털 방식의 거래, ③ 실제 화폐 또는 디지털자산으로의 교환 또는 전환에 사용될 수 있음

- 미국은 별도의 입법 없이 2014년 ‘가상화폐의 채굴, 양도, 교환 등에 대한 과세 기준 지침 공고(Notice 2014-21)’를 통해 기존 세법 규정의 과세 대상 소득 및 정보 보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의 과세를 명문화함¹⁶⁸⁾
 - 본 지침에서 제안한 과세 대상 소득에 더하여 2019년 10월에는 가상화폐 보유에 따른 세입규정(Revenue Ruling 2019-24)을 통해 하드포크 후 발생하는 에어드롭에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함
 - 이후 2020년부터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추가됨
 -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디지털자산(구 가상화폐)¹⁶⁹⁾ 거래는 다음과 같음
 - 자산(property)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제¹⁷⁰⁾
 - 보상 또는 포상¹⁷¹⁾
 - 채굴, 스테이킹 및 유사한 활동¹⁷²⁾
 - 하드포크와 연관된 에어드롭¹⁷³⁾
 - 과세를 위해 납세자는 거래와 관련된 디지털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지급 또는 수령일 기준의 미국 달러로 보고해야 함¹⁷⁴⁾

166) IRS Notice 2014-21, Section 2.Background

167) IRS Notice 2014-21, Section 3.Scope

168) 길용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8권 제4호, 한국조세법학회, 2023, pp. 83~84.

169) Notice 2014-21에서 관련 용어로 사용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개념이 현재 ‘디지털 자산’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이와 같이 기재하며, 본 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의 용어에 동일하게 적용됨

170) IRS Notice 2014-21, Section 4.FAQ (A-3, A-9)

171) IRS Notice 2014-21, Section 4.FAQ (A-10, A-11)

172) IRS Notice 2014-21, Section 4.FAQ (A-8)

173) IRS Revenue Ruling 2019-24

174) IRS Notice 2014-21, Section 4. FAQ (A-5)

-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교환이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가상화폐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거래 방식에 의한 미국 달러의 가치로 전환하여 결정함
- 과세대상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손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서상 디지털자산 확인란에 반드시 거래 여부를 기재해 주어야 하며,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신고 의무가 발생함¹⁷⁵⁾
- (1단계) 디지털자산의 거래 발생 시 다음의 문서를 보관함
 - 디지털자산의 구매, 판매, 교환 또는 기타 처분 내역과 관련한 문서
 - 통상적인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소득 또는 대금으로 지급받은 모든 디지털 자산의 미국달러로 측정된 공정시장 가치
 - (2단계) 거래를 통해 처분한 디지털자산의 기초가액과 자본 이익 또는 손실액의 계산이 요구되며, 이때 기초가액의 판단 기준은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① 디지털자산의 유형 ② 거래 날짜 및 시간 ③ 거래 단위 수 ④ 거래 시점의 공정시장가치(USD) ⑤ 판매 또는 처분한 디지털자산의 취득가액 정보 (자본 손익액 계산의 경우)가 필요함
 - (3단계)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디지털자산 소득을 신고함

175) IRS,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igital-assets>, 검색일자: 2024. 10. 15.

〈표 V-1〉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에 따른 신고 서식

거래 유형	신고 서식
-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자본 자산으로 판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Form 8949 자본 자산 판매 및 기타 처분
- 하드포크, 스테이킹, 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	Form 1040(Schedule 1)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
-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증여한 경우	Form 709 증여세 신고서
- 디지털자산으로 급여 혹은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 직원의 경우 Form 1040 · 독립계약자의 경우 Form 1040(schedule C)	Form 1040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Schedule C) 사업 이익 또는 손실
- 디지털자산을 고객에게 판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Form 1040(Schedule C) 사업 이익 또는 손실

자료: IRS,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igital-assets>, 검색일자: 2024. 10. 15. 내용 저자 정리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1) 기존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의무

가) 외국 계좌 정보 보고(FBAR)¹⁷⁶⁾

- 시민권자,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신탁 및 재산을 포함한 모든 미국 국적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외국 계좌 정보 보고 (Foreign Bank Accounts Report, 이하 FBAR) 관련 양식 제출의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내용을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에 규정하고 있음¹⁷⁷⁾

176) IRS,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검색일자: 2024. 10. 15.

177) 31 CFR §1010.350

-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금융 계좌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 서명 또는 기타 권한이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중 한 번이라도 해당 외국 금융계좌의 총 가치가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함
- 다만 은행이 상대 은행에 개설한 ① 대리 계좌나 당방 계좌(nostro accounts) ② 정부 기관 소유 계좌 ③ 국제금융기관 소유 계좌 ④ 미국 군사은행에 의해 유지되는 계좌 ⑤ 본인이 소유자 또는 수혜자인 개인연금계좌 ⑥ 본인이 참여자 또는 수혜자로 있는 퇴직플랜 계좌 ⑦ 본인이 수혜자로 있는 신탁의 일부로서,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FBAR를 제출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이 밖에도 통합 FBAR에 의해 본인의 모든 해외 금융 계좌가 보고되거나, 공동 소유자인 배우자를 통해 모든 해외 금융계좌가 적시에 FBAR을 통해 보고된 경우 또한 보고 의무 제외 대상이 됨
- 재무부 산하 ‘금융분석원(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에 보고 대상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제출함
 - FinCEN의 「은행보안법」 관련 전자 제출 시스템(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서면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FinCEN 리소스 센터에 유선상의 전자신고 면제 요청이 요구됨
 - FBAR은 제출처가 IRS가 아닌 재무부이므로,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양식이 아님
 - 납세자는 FBAR을 통해 ① 성명 ② 계좌번호 ③ 외국은행의 이름과 주소 ④ 계정 유형 ⑤ 연중 최대 가치와 같은 정보를 제출함
 - 미제출 시 10월 15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지연 및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의 한도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는데, 2024년 1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부과되는 과태료¹⁷⁸⁾의 한도액은 유형별로 최소 591달러에서 최대 173만 1,383달러¹⁷⁹⁾임¹⁸⁰⁾

178) 수익적 소유권 정보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179) 특정 실사 요건 위반 등

-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31일 지침을 통해 「은행보안법」을 수정하여 디지털자산(구 가상화폐)을 FBAR의 보고 대상 계좌의 범위에 포함시킴¹⁸¹⁾
 - 기존에는 가상 통화를 보유한 외국 계좌를 보고 대상 계좌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함
 -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외국 계좌의 총 가치가 연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목적의 FinCEN Form 114 양식을 제출해야 함

나) 정보교환체계 관련: 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FATCA)

- 미국은 국외 금융기관들이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IRS에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을 2010년 입법하여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¹⁸²⁾
 - 국외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자산 정보의 수집 및 추적이 역외 탈세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입법하였으며, 2014년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 작성의 기준이 됨
 - 국외 금융기관은 미국 국민 및 거주자 등이 소유한 예금, 증권, 펀드, 생명보험 또는 연금과 같은 금융 계좌를 식별하여, 납세자 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IRS에 제출해야 함
- 특정 국외 금융자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보고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 거주 및 비거주 외국(법)인, 파트너십 및 신탁이 보유한 계좌가 그 대상이 됨¹⁸³⁾
 - 해외 계좌의 계정 또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득, 손실, 감면, 공제, 총수입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 신고서상 제출 혹은 포함되는 등

180) 「미국연방규정집 31권」(Title 3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010.821

181) FinCEN Notice 2020-2

182)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미국의 해외계좌납세 준용법」, 2019. 6. 26.,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42/view.do?seq=1017359, 검색일자: 2024. 11. 1.

183)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검색일자: 2024. 10. 15.

반영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함

- 이때 보고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법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개인은 분리 및 합산 신고 여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됨
 - 미혼이나 분리 신고하는 기혼 개인의 경우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대상이 되는 자산의 총 가치가 5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언제든지 7만 5천달러 이상을 달성한 경우
 - 합산 신고를 하는 부부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대상이 되는 자산의 총 가치가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언제든지 15만달러 이상을 달성한 경우
 - 법인은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대상이 되는 자산의 총 가치가 5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언제든지 7만 5천달러 이상을 달성한 경우 보고 대상이 됨
 - 또한 괌, 푸에르토 리코, 사모아 등과 같은 미국령 준주(U.S. territories)는 미국의 범위에서 제외됨
- 상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FATCA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Form 8938(지정된 외국 금융 자산 명세서)을 작성하여 세금 신고 시 첨부해야 함
 -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는 지정된 외국 금융 자산의 가치에 관계없이 Form 8938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FBAR 보고를 위해 제출하는 양식과는 대체 관계에 있지 않은 양식이므로, FBAR 보고 대상 조건 역시 충족시키는 경우 FinCEN에 해당 양식인 FinCEN Form 104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FATCA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국외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특정 시스템의 등록 및 특정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요구됨¹⁸⁴⁾
 - 대상이 되는 국외 금융기관에는 ① 은행 등 예금기관 ② 뮤추얼 펀드 등 수탁 기관 ③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등 투자기관 ④ 현금 가치 상품이나 연금을 제공하는 특정 유형의 보험 회사가 포함됨

184) IRS, "FATCA information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titie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information-for-foreign-financial-institutions>, 검색일자: 2024. 10. 15.

- 단 정부 기관 및 비영리 단체, 일부 소규모 지역 금융 기관, 특정 퇴직플랜 관련 기관(retirement entity) 등은 제외됨
- 이들 국의 금융기관은 IRS의 ‘국제데이터 교환 서비스(International Data Exchange Service, 이하 IDES)’ 웹사이트¹⁸⁵⁾에 등록하고, 미국인 소유자가 있는 특정 외국 기관의 계정을 포함하여 미국 계좌에 대한 특정 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음
 - IDES 국외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 주재국의 세무 당국이 FATCA 제출 양식인 Form 8966 관련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준 XML 스키마 형식의 웹 애플리케이션임¹⁸⁶⁾
- 보고에 동의한 국외 금융기관은 관련 납세자가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정 지급금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 부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면제대상 외에 등록 및 보고에 동의하지 않는 국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2)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보고 의무

가) 보고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관련

- 2024년 6월 미국 재무부 및 IRS는 디지털 자산 처분과 관련한 중개인에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거래부터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최종 규정 FS 2024-23을 발표함¹⁸⁷⁾
- 이때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중개인은 수탁형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 특정 디지털 자산 호스팅 월렛 공급업체, 디지털 자산 키오스

185) IDES, <https://www.ides-support.com>

186) IRS, “International Data Exchange Service,”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검색일자: 2024. 10. 15.

187) IRS, “Final regulations and related IRS guidance for reporting by brokers on sales and exchanges of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newsroom/final-regulations-and-related-irs-guidance-for-reporting-by-brokers-on-sales-and-exchanges-of-digital-assets>, 검색일자: 2024. 10. 15.

- 크 및 특정 디지털 자산 지불 처리업체(PDAP) 등임
- 단 거래에 대한 패킹 및 언패킹, 유동성 공급자 거래, 스테이킹 거래, 디지털 자산의 대출 및 공매도 거래, 명목 원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Form 1099-DA에 따라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중개인을 통해 발생한 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관련 소득 신고가 보다 용이해짐
- 보고 의무는 2025년부터 그 다음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함
-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총수익을 보고하며,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보고해야 함
 - 2025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의 경우, 중개인이 Form 1099-DA와 관련 수취인 명세서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나) 내국세법 6050i 조항 관련 납세자의 디지털자산 정보 보고 의무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인프라법)은 2021년 11월 1일 개정을 통해 현금에 포함되는 자산 목록에 디지털자산을 추가한 바 있음¹⁸⁸⁾¹⁸⁹⁾
- 인프라법 제6050(a)조에서는 무역이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해당 사업 과정 수행 중 1건 이상의 거래에서 현금으로 1만달러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정보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88) Morgan Lewis, “New IRS Guidance Provides a Spot of Certainty Amid Digital Asset Limbo,” 2024. 1. 18., <https://www.morganlewis.com/pubs/2024/01/new-irs-guidance-provides-a-spot-of-certainty-amid-digital-asset-limbo>, 검색일자: 2024. 10. 15.

189) IJA §6050I(d)(3)

- 따라서 디지털자산이 본 조항의 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디지털자산 수령액 또한 1만달러 임계액 계산에 합산이 필요함
- 이때 보고하는 관련 정보는 ① 현금을 수령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납세번호(TIN), ② 수령한 현금의 금액, ③ 거래의 날짜 및 성격, ④ 장관이 규정하는 기타 정보로, 형식 또한 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짐
- 다만 IRS는 2024년 1월 16일 Announcement 2024-4를 통해, 당분간은 납세자에게 인프라법 제6050I조에 근거한 디지털자산 수령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고의 보류를 발표함¹⁹⁰⁾
- 디지털자산 수령을 보고하기 위한 추가 정보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1만달러 임계값 계산 시 디지털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밝힘

2. 영국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영국은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을 통해 ‘암호자산(Cryptoassets)’과 관련한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84A(1)조에서 암호자산을 분산원장 기술의 형태를 사용하고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거래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계약적 권리의 암호로 보호된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때 암호자산은 전송, 저장, 전자적 거래가 가능해야 함¹⁹¹⁾

190) IRS, “[Announcement 2024-4] Transitional guidance under section 6050I with respect to the reporting of information on the receipt of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pub/irs-drop/a-24-04.pdf>, 검색일자: 2024. 10. 15.

191)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10100 - Introduction to cryptoassets: what are crypto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10100>, 검색일자: 2024. 11. 13.

- 주요 유형으로는 교환 토큰(exchange token),¹⁹²⁾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이 존재함¹⁹³⁾
 - 영국은 암호자산을 통화 또는 화폐로 간주하지 않으며, 정의에 따른 토큰의 유형이 아닌 거래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짐¹⁹⁴⁾
- 영국 HMRC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1월 각각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 자산 과세 관련 매뉴얼인 ‘Cryptoassets tax for individuals’와 ‘Cryptoassets tax for businesses’를 발표함
- 별도의 입법 없이 본 매뉴얼에 근거하여 암호자산 관련 과세를 운영함
 -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암호자산 처분 시 자본이득세가, 취득 시 소득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인 것으로 파악됨
 -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사회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함께 발생함
 - 또한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공제액이 암호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암호자산 초과 시 2024/25 과세연도 기준 3천파운드¹⁹⁵⁾를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가 부과됨¹⁹⁶⁾
- 개인이 근로소득,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으로 암호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및 그에 따른 사회보험료의 납부가 요구됨¹⁹⁷⁾
- 고용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암호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암호자산이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거래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즉시 전환 가능 자산

192) OECD 기준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됨

193)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10100 - Introduction to cryptoassets: what are crypto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10100>, 검색일자: 2024. 11. 13.

194) 상동

195) Gov.uk, “Guidance: Capital Gains Tax rat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guidance/capital-gains-tax-rates-and-allowances>, 검색일자: 2024. 11. 13.

196) Taxbit, “UK Crypto Tax Guide,” <https://www.taxbit.com/blogs/uk-tax-guide/#:~:text=For%20tax%20year%20ending%20April,SA108%20Capital%20Gains%20Tax%20Summary.>, 검색일자: 2024. 11. 13.

197)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2110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Income Tax: earnings from employment - readily convertible 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100>, 검색일자: 2024. 11. 13.

(Readily Convertible Assets, RCA)¹⁹⁸⁾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부과함¹⁹⁹⁾

- 거래 이익(trading profits)으로 판단되지 않는 채굴 및 스테이킹의 경우, 토큰 수령 시점의 영국 파운드 기준 가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²⁰⁰⁾²⁰¹⁾
- 서비스에 대한 대가 혹은 그 기대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되는 에어드롭의 경우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²⁰²⁾²⁰³⁾
 - 이때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성이 없거나 사업의 일부가 아닌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에어드롭에 의한 암호자산 수령 시 과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할 때에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암호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결손액의 이월이 허용됨²⁰⁴⁾
- 암호자산 관련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암호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 거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 및 법인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자

198) 인정된 거래소나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거래 약정이 존재하는 등 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HMRC, "Employment Income Manual: EIM11900 - PAYE: meaning of readily convertible 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11900>, 검색일자: 2024. 11. 13.

199)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2115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Income Tax: mining transaction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150>, 검색일자: 2024. 11. 13.

200)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2115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Income Tax: mining transaction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150>, 검색일자: 2024. 11. 13.

201)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2115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Income Tax: mining transaction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150>, 검색일자: 2024. 11. 13.

202) 길용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8권 제4호, 한국조세법학회, 2023, pp. 83~84.

203)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2125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Income Tax: airdrop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250>, 검색일자: 2024. 11. 13.

204)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40050 - Cryptoassets for businesses: which taxes apply,"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0050>, 검색일자: 2024. 11. 13.

본이득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됨²⁰⁵⁾

- 법인이 교환 토큰 매수 및 매도, 암호자산 간 교환, 채굴, 교환 토큰을 대가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암호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²⁰⁶⁾
 - 교환 토큰의 매수 및 매도가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그 수익과 지출은 거래 이익(trading profit)에 포함됨²⁰⁷⁾
 - 교환 토큰의 경우 소유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가치를 갖는 경우 과세 대상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²⁰⁸⁾
 - 교환 토큰의 매수 및 매도가 거래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그 빈도, 조직화 수준, 의도로 인해 결정될 수 있으며, HMRC는 이러한 거래가 희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거래 이익(trading profit)으로 판단되지 않는 채굴 및 스테이킹의 경우,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큰 수령 시점의 영국 파운드 기준 가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²⁰⁹⁾²¹⁰⁾

205)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2005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which taxes apply,"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0050>, 검색일자: 2024. 11. 13.

206)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40150 - Cryptoassets for businesses: trading in exchange token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0150>, 검색일자: 2024. 11. 13.

207)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40150 - Cryptoassets for businesses: trading in exchange token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0150>, 검색일자: 2024. 11. 13.

208)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41200 - Cryptoassets for businesses: Corporation Tax: Corporation Tax on chargeable gains - introduc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1200>, 검색일자: 2024. 11. 13.

209)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40200 - Cryptoassets for businesses: mining transaction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0200>, 검색일자: 2024. 11. 13.

210) HMRC, "Cryptoassets Manual: CRYPTO40250 - Cryptoassets for businesses: staking,"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0250>, 검색일자: 2024. 11. 13.

- 고객이 법인에게 교환 토큰을 지불하거나 교환 토큰을 공급업체에 지불 시 사용하는 경우, 이때 제공하거나 받은 토큰은 과세 거래 이익에 포함되어야 함
- 이 밖에도 영국은 2020년 1월 10일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을 암호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감독기관으로 지정함²¹¹⁾
 - 자금 세탁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FCA의 AML/CTF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 세탁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²¹²⁾
 - FCA는 2023년 9월 1일부터 암호자산 관련 사업체들에 트래블룰(Travel Rule)에 근거한 암호자산 전송 관련 정보의 수집, 검증 및 공유 의무를 부여함
 - 또한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매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는 법안을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 영국은 2012년 9월 FATCA 관련 보고를 위해 미국과 자동 세무 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하여 이와 관련한 협정을 맺은 최초의 국가로, 2013년 4월에는 G5 국가들과 함께 FATCA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정보 교환 이니셔티브를 발표함²¹³⁾
 - 이에 더하여 영국은 G20 국가와 OECD가 협력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과 관련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인 ‘공통보고기준(CRS)’ 개발에도 참여한 바 있음

211) FCA, “Cryptoassets,” <https://www.fca.org.uk/firms/cryptoassets-information>, 검색일자: 2024. 11. 13.

212) FCA, “Cryptoassets: AML / CTF regime,” <https://www.fca.org.uk/firms/financial-crime/cryptoassets-aml-ctf-regime>, 검색일자: 2024. 11. 13.

213) HMRC, “Consultation Outcome: Tax administration: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UK’s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greement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f3fa3e5274a2e87db4b2e/TIIN_8148_tax_admin_automatic_exchange.pdf, 검색일자: 2024. 11. 13.

- 영국은 이후 영국령 국가들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 자동 세무 정보 교환 협정을 진행함
 - 또한 2024년 현재 100개국 이상이 CRS에 근거한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²¹⁴⁾
- 이러한 과세 관련 정보 교환 활성화에 대응하여, 영국 재무부는 2015년 영국 금융 기관에 대한 실사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인 「국제 조세 준수 규정」(Th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Regulations 2015)을 도입함²¹⁵⁾
- EU 내 행정협력지침(DAC)에 따른 의무 준수 및 공통 보고 표준(CRS)에 대한 비 EU 관할권과의 유능 기관 협정에 따른 영국의 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함
 - 본 규정은 DAC 및 CRS, 미국과의 FATCA에 근거한 정보 보고를 위한 실사 요건의 변경, 보고 의무, 전자 신고 시스템, 보고대상인 통지, 위반 및 과태료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4월에는 본 규정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정보교환 매뉴얼’(Intern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Manual)을 발간함
- 암호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영국은 2023년 11월 OECD CARF의 공동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2027년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제공의 의지를 선언함²¹⁶⁾
- 2024년 봄 예산안에 CARF의 이행과 CRS 개정에 대한 협의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두 제도를 모두 국내 보고에까지 도입하도록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있음

214) OECD, “Signatur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nd Intended First Information Exchange Date,” 2024. 5. 16.,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tax-transparency-and-international-co-operation/crs-mcaa-signatories.pdf>, 검색일자: 2024. 11. 1.

215) legislation.gov.uk, “Th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Regulations 2015,”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878/contents>, 검색일자: 2024. 11. 13.

216) HMRC,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ommon Reporting Standard amendments, and seeking views on extension to domestic reporting - summary of responses,” 2024. 10. 30.,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common-reporting-standard/outcome/cryptoasset-reporting-framework-common-reporting-standard-amendments-and-seeking-views-on-extension-to-domestic-reporting-summary-of-responses>, 검색일자: 2024. 11. 13.

- CARF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의 범위, 실질적인 세부 보고 정보의 구현 및 추가 지침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또한 CRS 규정의 범위를 변경하고 보고 대상 금융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며, 디지털 플랫폼 모델 규칙(MRDP) 제도와 일관성을 갖도록 과태료 제도를 변경하고자 함
- 영국은 국내 보고까지의 확장을 포함한 CARF 제도와 CRS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6 회계연도 관련 보고서는 2027년 5월 까지 제출 의무가 발생함
 - 영국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영국의 거주 및 비거주 고객에 대해 CARF에서 지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익년도 5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 2024년 10월 현재 이해관계자로부터 33개의 서면 응답을 비롯한 다수의 회의 과정을 완료하여 초안 작성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후 추가적인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 있음

3. 프랑스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프랑스는 「화폐및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에 디지털자산(actifs numériques)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조세기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의 디지털자산 과세 규정에 준용함²¹⁷⁾
- 「화폐및금융법」은 디지털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토큰(jeton)은 자산의 소유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 등록, 보유 또는 이전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내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되며, 제L.211-1조에 언급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

217) 「화폐및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Article L54-10-1

- 족하는 토큰과 제L.223-1조에 언급된 저축 채권은 제외함
-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법정화폐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화폐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 수단으로 인정하고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임
- 또한 디지털자산에는 2023년 5월 31일 암호화자산 시장에 관한 EU 규정 2023/1114(MiCA)의 적용을 받는 암호화자산이 포함됨
- 프랑스는 2019년부터 디지털자산 또는 이와 관련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가 부과됨²¹⁸⁾²¹⁹⁾
- 과세대상 거래에는 법정화폐에 대한 대가로 디지털자산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를 대가로 양도하는 행위, 디지털자산 이외의 재산을 교환하는 행위, 디지털자산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교환 등이 포함됨
- 디지털자산의 개념은 「화폐및금융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함
 - 디지털자산 또는 관련 권리 간의 잔액이 없는 교환 운영은 중간 거래에 해당하며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음
 - 채굴활동의 경우 개인이 채굴활동에서 디지털자산을 취득한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으나, 이후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됨²²⁰⁾
- 총 양도소득(손실)의 산정 방식은 “양도가액-[총 취득가액×양도가액/포트폴리오 전체 가치]”임
- 양도가액은 실제 수령액 또는 양도 과정에서 양도인이 획득한 대가의 가치이며, 포트폴리오의 전체 가치는 양도 전 수행된 모든 디지털자산 취득 시 법정통화로 지급한 모든 가액의 합임

218) 프랑스 「조세기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150 VH bis

219) IMPOTS, “Les cessions mobilières,”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les-cessions-mobilieres>, 검색일자: 2024. 11. 15.

220) Simmons-Simmons, “How France taxes cryptocurrency and NFTs,” <https://www.simmons-simmons.com/en/features/tax-on-cryptocurrency/clb0yenu0056tsrk3eyavwxi/how-france-taxes-cryptocurrency-nfts>, 검색일자: 2024. 11. 15.

- 주식 등 증권과 달리 손실은 이월될 수 없음²²¹⁾
- 과세연도 동안 총 금액이 305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디지털자산 양도와 관련된 거래는 면제됨
-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전문직업인과 개인의 소득 분류를 달리 취급함²²²⁾
 -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전문직업인(전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은 비상업이익(Bénéfices Non Commerciaux, BNC)으로 분류됨
 -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직업인은 과세연도 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해 수많은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고 이 활동을 위해 전문 거래자와 동일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자를 의미하며, 주식 관련 전문직업인 및 암호화폐 채굴에 참여하는 납세자와 동일한 조세제도가 적용됨²²³⁾
 - 기존에는 “산업 및 상업이익(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BIC)”으로 소득 분류되었음
 - 기타 비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 양도 이익은 BIC로 분류됨
 - BIC는 산업, 상업 및 공예 활동을 통해 자연인이 얻은 이익을 의미하며, 비상업 이익은 프리랜서 전문직종과 같이 전문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이 얻은 이익을 말함²²⁴⁾

221) Blockpit, “Crypto Taxes France: Complete Tax Guide [2024],” <https://www.blockpit.io/tax-guides/crypto-tax-france>, 검색일자: 2024. 11. 22.

222)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Ministère chargé du Budget et des Comptes publics, “Le régime fiscal des cryptomonnaies,” <https://www.economie.gouv.fr/cedef/regime-fiscal-cryptomonnaies>, 검색일자: 2024. 11. 15.

223) IMPOTS, “Comment déclarer les plus ou moins values sur cessions d'actifs numériques (cryptomonnaies ..)?,”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questions/comment-declarer-les-plus-ou-moins-values-sur-cessions-dactifs-numeriques>, 검색일자: 2024. 11. 15.

224)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Ministère chargé du Budget et des Comptes publics, “Impôt sur le revenu : BIC, BNC, comment ça marche?,”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impot-sur-revenu-bic-bnc>, 검색일자: 2024. 11. 15.

- 양도소득 세율은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에 따른 소득 분류에 따라 달리 취급됨
 - 디지털자산의 거래빈도와 관련없이 일반 개인의 소득은 BIC로 분류되어 30%의 정액 세율로 분리과세되며(12.8%+17.2%는 사회보장기여금), 납세자는 이 제도가 아니라 일반 누진세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음²²⁵⁾
 -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BNC로 분류되어 누진세율(11~45%)에 따라 과세됨²²⁶⁾

- 토큰증권의 과세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일반 증권 거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감독원(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토큰증권에 대해 금융상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 EU 금융상품지침(MiFID II)의 증권에 포함되어 규제하도록 함²²⁷⁾

- 한편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2024년 지침을 통해 NFT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²²⁸⁾
 - 지침은 NFT는 지급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의 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따라서 NFT는 은행 및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225) QUE CHOISIR, “Avez-vous intérêt à renoncer au prélèvement forfaitaire unique de 30 % ?,” <https://www.quechoisir.org/actualite-epargne-avez-vous-interet-a-renoncer-au-prelevement-forfaitaire-unique-de-30-n91134/>, 검색일자: 2024. 11. 15.

226) QUE CHOISIR, “Fiscalité des bitcoins Tout change en 2023,” <https://www.quechoisir.org/actualite-fiscalite-des-bitcoins-tout-change-en-2023-n105003/>, 검색일자: 2024. 11. 15.

227) AMF, “Legal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to security tokens and precisions on bulletin board,” <https://www.amf-france.org/en/news-publications/news/legal-analysis-application-financial-regulations-security-tokens-and-precisions-bulletin-board>, 검색일자: 2024. 11. 15.

228) Bofip, “RES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 Champ d'application et territorialité - Qualification des opérations réalisées à l'aide de jetons non fongibles dits « NFT » au regard des règles de la TVA,” <https://bofip.impots.gouv.fr/bofip/14103-PGP.html/identifiant=BOI-RES-TVA-000140-20240214>, 검색일자: 2024. 11. 15.

- 디지털 카드 발급이 자동화되어 인적 개입이 최소화되는 경우 디지털 서비스로 분류되고, 이러한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기본 거래에 따른 일반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름
- 디지털 아트워크와 관련된 경우에는 5.5%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저작권의 양도가 포함되는 경우 10%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²²⁹⁾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1) 기존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의무

- 납세자는 소득 신고 시 디지털자산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함²³⁰⁾
 - 온라인 소득 신고 시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을 별도 양식(2086)에 작성하는 경우, 기본 소득세 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신고됨
 - 서류 신고 방식을 취하는 경우 별도 양식(2042C)에 양도소득의 총액을 입력해야 함
 - 해외계좌에 보유한 암호화자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3916-bis)을 작성해야 함
 - 미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당 750유로, 누락 또는 부정확한 경우 12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1만유로를 한도로 하며, 연중 계좌의 가치가 5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미신고 시 1,500유로, 누락 또는 부정확한 경우 250유로임²³¹⁾

229) 참고로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0%임

230) IMPOTS, “Comment déclarer les plus ou moins values sur cessions d’actifs numériques (cryptomonnaies ..)?,”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questions/comment-declarer-les-plus-ou-moins-values-sur-cessions-dactifs-numeriques>, 검색일자: 2024. 11. 15.

231) Blockpit, “Crypto Taxes France: Complete Tax Guide [2024],” <https://www.blockpit.io/tax-guides/crypto-tax-france>, 검색일자: 2024. 11. 22.

2)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보고 의무

- 프랑스는 2025 재정법(예산안)에서 EU DAC8 지침을 도입하였으며, EU DAC8과 마찬가지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 거래, 디지털자산 보유에 사용된 계정 및 계정 소유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함²³²⁾
 - 디지털자산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실사절차 준수에 대한 국세청의 감독을 위한 「조세절차법(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을 개정함
 -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EU 외에 소재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프랑스에서 보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
 - 또한 EU 회원국 간에 교환되는 조세정보의 사용의 범위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당국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추가함

- 2023년 EU는 “암호화자산 관련 자동정보교환 지침(2023/2226, DAC8)”을 통해 암호화자산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및 고액자산가에 대한 판결의 국가 간 교환에 대해 다루고 있음²³³⁾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관련 내용은 OECD CARF 및 CRS 개정과 연관됨
 - 회원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내법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됨
 - 2027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의 과세당국은 과세연도 종료 후 9개월 내에 자동 교환을 통해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보고한 정보를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세무상 거주하거나 승인을 받았거나 등록된 회원국의 과세당국에 송부해야 함

232)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b0324_projet-loi#_Toc179428414, 검색일자: 2024. 11. 22.

233) IBFD, “European Union/OECD/International - Everybody’s Got Something To Hide Except Me and My NFT’s Monkey - An Analysi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AC8 Proposal on Automatic Exchange of Cryptoasset Inform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bit_2023_02_e2_1%23bit_2023_02_e2_1, 검색일자: 2024. 11. 15.

- 정보교환은 EU 위원회가 개발한 XML 스키마를 사용하여 EU 공통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DAC 체제에 따라 자동정보교환에 이미 사용되는 공통 통신 네트워크임
- 지침은 회원국에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제재적인 벌금을 규정하도록 하며 최소 기준을 제안함²³⁴⁾
 - 제재 대상은 두 번의 유효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공된 정보에 보고되어야 할 정보의 25% 이상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임
 - 벌금 금액은 최소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자연인인 경우 2만유로, 연 매출이 600만유로 미만인 경우 5만유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국적기업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유로임

4. 일본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일본은 2019년까지는 암호화자산과 관련하여 ‘가상화폐(仮想通貨)’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2020년 5월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²³⁵⁾²³⁶⁾
 - 불특정 개인에게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양도가 가능함
 - 법정통화 또는 법정통화로 표시된 자산(선불카드 등)으로 간주할 수 없음

234) IBFD, “European Union - DAC8: Commentary on the European Union’s New Crypto Tax Reporting Regime,”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t/html/et_2023_09_e2_3.html, 검색일자: 2024. 11. 15.

235)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제2조 제14항 제1호 및 제2호

236) 日本銀行, 「質問暗号資産(仮想通貨)とは何ですか?」,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money/c27.htm>, 검색일자: 2024. 12. 30.

□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된 과세 관련 내용을 「암호자산 등에 관한 세무상 취급에 대해(暗号資産等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암호화자산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음²³⁷⁾²³⁸⁾

○ 일본 국세청은 ① 암호자산을 매각한 경우 ② 암호자산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③ 암호자산끼리의 교환을 실시한 경우 ④ 암호자산의 분열(분기)에 의해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⑤ 마이닝, 스테이킹, 렌딩 등에 의해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간주함

○ 암호화자산 거래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급여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최대 45%(주민세 포함 시 55%)가 부과됨

- 이때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된 급여소득자로서 해당 암호화자산 소득이 20만엔 이하면 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주민세에 대한 확정신고만 요구됨²³⁹⁾

- 또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암호화자산끼리의 손익, 기타소득 내에서의 손익 차감은 가능하나,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다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고 이월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됨

□ 일본 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자산의 분리 과세를 제안하는 2024년 7월 ‘암호자산에 대한 세제개정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현재 암호화자산 과세와 관련한 세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²⁴⁰⁾

○ 해당 요청서를 통해 고정 세율 20%의 분리 과세, 3년 결손금 이월 공제, 암호화

237) 国税庁, 「暗号資産等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及び計算書について(令和6年12月)」,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hotoku/kakuteishinkokukankei/kasoutuka>, 검색일자: 2024. 12. 30.

238) 参議院,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p. 5,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r06pdf/202424101.pdf, 검색일자: 2024. 12. 30.

239) 参議院,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p. 7,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r06pdf/202424101.pdf, 검색일자: 2024. 12. 30.

240) Primetimes, 「日本ブロックチェーン協会, 「暗号資産に関する税制改正要望(2025年度)」を政府に提出」, (2024. 7. 19.), <https://prtmes.jp/main/html/rd/p/000000024.000081775.html>, 검색일자: 2024. 12. 30.

자산 교환 시 과세 폐지 등을 요구함

- 또한 2024년 12월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이에 따른 암호화자산의 분리과세 내용이 언급된 바 있음²⁴¹⁾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 일본의 과세 관련 정보 보고는 주로 협정 및 조세조약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조세조약 체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과 같은 형태로 양자 간 세무당국의 과세정보를 상호 제공하며, 관련 내용을 사무운영지침²⁴²⁾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⁴³⁾
 - 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개인 납세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각국의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사실을 규명하기 충분하지 않을 때 외국 세무당국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요청하거나 제공함
 - ② 자발적 정보교환: 국제 협력 등의 관점에서 외국의 세무당국에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 ③ 자동 정보교환: 법정 기록에서 취득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지급 정보(이자,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무형자산 사용료, 급여 및 보수,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 등)의 경우 지급국의 세무당국에서 수령 국가의 세무당국에 일괄적으로 발송함
- 또한 2014년 일본 금융청, 재무성, 국세청은 미국 재무부와 함께 “FATCA 이행 촉진 및 국제 조세 준수 개선을 위한 정부간 협력 프레임워크에 관한 미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2016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²⁴⁴⁾²⁴⁵⁾

241) Yahoo Japan News, 「石破総理、暗号資産税制改正やETF受け入れに慎重な姿勢 = 衆議院本会議」, 2024. 12. 3., <https://news.yahoo.co.jp/articles/3ee653ec9969c39a0201f21218e26caa0e38664a>, 검색일자: 2024. 12. 30.

242) 国税庁, 「租税条約等に基づく相手国等との情報交換、送達共助及び徴収の共助手続について(事務運営指針)」, <https://www.nta.go.jp/law/jimu-unei/sonota/030407/01.htm>, 검색일자: 2024. 12. 30.

243) 国税庁, 「租税条約等に基づく情報交換」,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kokusai/eoi/index.htm>, 검색일자: 2024. 12. 30.

244) 国税庁, 「FATCA実施円滑化と国際的税務コンプライアンス向上のための政府間協力枠組みに関する日米当局共同声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kokusai/crs/index.htm>, 검색일자: 2024. 12. 30.

- 또한 일본은 OECD CRS의 준수를 공표함에 따라 2017년부터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거주국의 명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²⁴⁶⁾
 - 일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특정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관할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금융계좌 정보는 조세조약 등의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각국의 세무관청과 자동으로 교환됨
 - 일본 국세청의 e-Tax 시스템 내에 ‘CRS 보고 코너(CRS報告コーナーとは)’를 마련하여 CRS 관련 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xml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함²⁴⁷⁾
- 암호화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47개 국가와 함께 CARF 이행에 관한 공동성명에 동참한 바 있음²⁴⁸⁾
 -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이루어진 세법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에 대한 암호화자산 등의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신고 시스템(非居住者に係る暗号資産等取引情報の自動的交換のための報告制度, 이하 일본판 CARF)’의 구축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²⁴⁹⁾
 - 일본이 시행하고자 하는 CARF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V-2>와 같음

245) 国税庁, 「米国のFATCA実施円滑化等のための日米当局の相互協力・理解に関する声明の一部を修正する追加的声明」,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kokusai/crs/index.htm>, 검색일자: 2024. 12. 30.

246) 国税庁, 「共通報告基準(CRS)に基づく自動的情報交換に関する情報(「CRSコーナー」)」,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kokusai/crs/index.htm>, 검색일자: 2024. 12. 30.

247) e-Tax, 「CRS報告コーナーについて」, <https://www.e-tax.nta.go.jp/e-taxcrs/e-taxcrs0.htm#:~:text=1.%20CRS報告コーナーとは&text=OECDにおいて、非居住者、実施を約束しました。>, 검색일자: 2024. 12. 30.

248) 財務省, 「暗号資産等報告枠組みの実施に向けた共同声明」,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20231110_carf.html, 검색일자: 2024. 12. 30.

249) 財務省, 「令和6年度税制改正の大綱(5/10)」, - 五 国際課税 - 3. 非居住者に係る暗号資産等取引情報の自動的交換のための報告制度の整備等,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05.htm, 검색일자: 2024. 12. 30.

〈표 V-2〉 일본 CARF의 개요

수행 사항	내용
적격 자산 및 거래의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착 대상 암호화자산 등의 식별 및 해당 자산과 관련된 거래(구매, 판매, 교환, 증개, 양도 또는 이러한 행위의 수락)
암호화자산과 같은 거래를 수행하는 자(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한 판단 및 지속적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호화자산 등의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고서'를 입수함으로써 세법상 거주 국가를 확인 신고서의 취득을 통한 세법상 거주 국가 확인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거래에 대해서도 수행 해외 이전과 같은 고객의 세금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포착하고 관리
대상 계약의 세무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년 4월 30일까지 소정의 정보(가상자산 금액, 총량, 거래횟수 등)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12월 31일을 고객확인절차의 기록일로 하고 고객확인절차의 결과로 신고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대상 서류를 보유해야 함
이행 절차의 기록 및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확인 및 세무당국에 대한 보고와 같이 구현된 절차의 세부정보를 사전에 결정된 기간 동안 기록하고 저장함

자료: EY Japan, 「日本版CARFの導入および日本版CRSの改正と関連当局の動向」, https://www.ey.com/ja_jp/technical/ey-japan-tax-library/tax-alerts/2024/tax-alerts-02-02-02, 검색일자: 2024. 12. 30.

5. 국가별 비교

- 앞서 설명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및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의무 관련 내용을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면 〈표 V-3〉과 같음
 - 암호화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과세가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소득세, 증여세 혹은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과세 중에 있음
 -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간에도 거래 유형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지거나,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여부에도 차이가 있었음
 - 과세 관련 정보 보고의무에 있어서는 미국이 '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FATCA)' 등을 먼저 시행하며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암호화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일본이 OECD CARF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프랑스는 EU DAC8 지침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미국은 암호화자산과 관련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보고 의무와 같은 독자적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V-3〉 국가별 비교

국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과세 관련 정보 보고의무	
		기존	암호화자산 관련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조각투자상품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세법 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 집계표 제출의무 「법인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CARF 도입 예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유형에 따라 소득세(자본소득, 사업소득 등) 및 증여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계좌정보보고의무 (FBAR) 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 (FAT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보고의무 1만달러 이상 무역관련 디지털자산 대금 수령 보고의무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시 소득세 부과 처분 시 3천파운드 공제 후 자본이득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FATCA 협약 국제조세준수규정(금융 기관 실사 및 보고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CARF 도입 예정(국내 정보 보고의무 포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자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전문직업인과 개인의 소득 분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신고 시 디지털자산 거래 이익 신고(국내 계좌 및 해외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EU DAC8 지침 도입 예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FATCA 협약 OECD CRS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CARF 도입 예정

자료: 본문 저자 정리

Ⅵ. 시사점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의의

- 본 보고서는 암호화자산 거래를 악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를 통한 사전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과 이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OECD 주도의 국제적 정보교환체계 구상을 살펴봄
 -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구체적 내용과 국가별 정보 보고 체계의 현황과 그 한계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 국가별 노력도 살펴봄
 - 본 보고서는 OECD 주도의 국제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CARF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 이행에 있어 고려할 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정보교환체계 자체의 실효성 또는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음

- OECD 주도의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도입은 각 국가 간 과세 주권을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출현에 따른 세무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마련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이미 CRS를 통해 검증된 방식으로, 국가 간 가상자산 과세정보의 교환이 역외 탈세, 자금세탁, 공증협박자금조달과 같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평가됨
 - 현행 개별 국가의 제도가 불법의 임박 내지 사후적 정책임에 반하여, CARF는 사전의 정보 수집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과세 관청의 과세권 확보를 보장하는 정책임
 - 이러한 국제적 협조 체계는 해외 거래가 용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능력만으로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암호화자산의 본질적 성질을 고려한 것으로, 암호

화자산에 대한 적극적 과세를 고려하는 세계 주요국은 추세에 부응하는 정책적 결과로 볼 수 있음

2.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시 고려사항

-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의 구축에 따른 암호화자산의 익명성의 퇴색과 함께 암호화자산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CARF의 도입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의 사항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암호화자산의 토대인 블록체인 기술은 과세 시스템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바, CARF의 도입이 이러한 영역에서의 익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암호화자산의 익명성이 전통적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을 배제하기 위한 태생적 성질로 존중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익명성의 무조건적인 보장이 공적인 영역에 까지 최우선으로 추구되어야 할 불변의 가치는 아님
 -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의 보장은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과세 영역으로 양성화 시키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공익적 의도와 상충하는 가치임
 - 헌법상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CARF의 도입은 공익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받아야 함
 - 현재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중앙화거래소 이용자들은 금융계좌를 연동시켜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 만일 해외거래소 이용자들만 익명성을 보장한다면,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탈세, 자금세탁 등 각종 위법행위를 방기하는 결과가 될 것임
 -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거래소에서 암호화자산을 본인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는 시점에 어차피 과세정보가 드러나며, 이것은 CARF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이용자들의 과세자료 확보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불과함
-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세제 및 세정상의 가상자산 정책은 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이행에 발맞추어 국내 가상자산 과세 및 정보교환 정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고민할 시점임

- 특히 CARF는 암호화자산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므로 국내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에 토큰증권을 포함하여 NFT, 전자화폐 등 CARF의 보고 대상 자산개념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특정금융법의 정의 개념을 넘어 세법상의 가상자산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 까지 포함하여 암호화자산의 범위 설정을 가상자산 과세 논의와 병행하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를 3차에 걸쳐 유예하였으며, 여전히 과세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시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적 준비 사항으로 CARF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정비 작업이 필요한바, 법령 제정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이 특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CARF가 예견하고 있듯 보고의무자인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고의무나 실사의무를 CRS와 상호 보완 내지 호환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CARF는 CBDC 등은 보고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CRS의 실사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CARF의 실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음
 - 아울러 CRS는 CARF의 대상에도 포함되는 암호화자산의 경우 CARF에 따라 보고되면 CRS 총수익의 해당 부분 보고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선택 조항을 두고 있는바, 국내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표 VI-1〉 CARF와 CRS의 주요 내용 비교

분류	CARF	CRS
보고 대상	암호화자산(가상화폐, NFT, 토큰증권), CBDC·특정 전자화폐 상품 등 제외	개인: 모든 금융계좌 단체: 기존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모든 신규 금융계좌
보고 정보	보고대상 사용자 및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정보,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	계좌보유자 및 보고금융거래회사 등의 정보, 계좌 잔액, 지급이자, 배당 등
보고 의무자	암호화자산사업자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보험회사 (정부단체, 중앙은행, 국제기구 제외)
교환 시기	1년의 정보를 역년 말 이후 9개월 이내에 국가 간 교환(2027년 시행)	매년 9월까지 이전 연도 말의 정보를 교환
실사 절차	보고대상 사용자 식별(본인확인서)	보고대상계좌 식별(본인확인서)

자료: 저자 정리

-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명확한 거래 정보 보고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CARF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성실 보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CARF는 개별 국가가 행정적 제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EU DAC8도 과태료의 최소 기준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국내법 도입에 있어 보고의무나 실사의무 미이행과 관련한 제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EU DAC8은 최소 기준을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자연인인 경우 2만유로, 연 매출이 600만유로 미만인 경우 5만유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국적기업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유로로 하고 있음
 -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사업상 운영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보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사용자의 소득세 신고 내용 중 암호화자산 관련 신고 내역을 교차 확인할 수 있음

- 암호화자산의 보유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중국적인 책임자는 암호화자산 사용자이며, 이러한 사용자의 자산 신고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담보되지 않으므로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2차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설계한 것이 CARF 도입의 취지임
- CARF와 관련된 국내법 제정 시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사업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의 정보 수집도 계속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정보 수집 측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FATF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정보 보고 의무도 부담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다른 법상의 의무라고 할지라도 정보 보고 및 수집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특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할 때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범자의 입장을 고려한 법제가 바람직할 것임
- 암호화자산 고유의 특성상 CARF의 도입으로 과세 방식을 회피하는 우회적인 다른 신종 거래 방식의 출현이나 새로운 암호화자산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함
 - 이러한 점에서 과세당국은 행정적·법적인 정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신종 거래 방식이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을 포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지속적 자원 투입이 필요함
 - OECD에서 제공하는 XML 스키마 등을 기반으로, 자동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자산을 적시에 포착하기 위한 IT 기술 기반 작업이 필요함
 - 디파이(DeFi) 플랫폼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자산사업자들의 포섭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CARF는 이에 대해 디파이(DeFi) 플랫폼도 보고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으나, 아직 플랫폼 운영자의 실질적 의무이행 확보 방안의 구체성은 부족한바, 이에 대한 국내적 차원의 정책 대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CARF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현재 48개국이 CARF MCAA에 참여하고 있어, 개별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국제적, 국내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CARF 도입의 실효성을 위해 시장 규모가 큰 다수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 미국은 암호화자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2024년 디지털자산 정보 보고 의무를 국내법으로 도입하여 제도적으로는 관련 정보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2024년 11월 CARF MCAA에 참여하지 않았음
- 국제적 공조가 제한된다면 MCAA 외에도 양자간 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참고문헌

1. 문헌자료

고동원,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상사법학연구 제31집 제4권, 2018.

국세청,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 -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 보도자료, 2024. 7. 2.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보도자료, 2024. 9. 29.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주)뮤직카우 제재 면제 의결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 보도자료, 2022. 11. 29.

_____,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3. 2. 3.

_____,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2024. 6. 11.

_____,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 5. 1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보도자료, 2023. 12. 20.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2024.

기획재정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보도자료, 2023. 11. 10.

- _____,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보도자료, 2024. 7. 25.
- _____,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보도자료, 2024. 7. 25.
- 김기주·이명숙, 「블록체인 기술과 신뢰의 생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한국 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7권 제3호, 2022.
- 김범준·김석환,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 과제」, 『사법』 vol.1, no.66, 2023.
- 김병연·권오훈,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미국과 한국의 증권규제를 중심으로-」, 『상사판례 연구』 제34권 제3호, 2021.
- 김재진·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 2022.
- 길용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8권 제4호, 한국조세법학회, 2023.
- 박영윤, 「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및 시사점」, 『금융법연구』 제19권 제1호, 2022.
- 박주철·김재경·정효림,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방안 연구」, 『세정연구』 23-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변혜정,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의 발전방향과 현안」, 『법학논고』 제4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이동규,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이소현·박정우,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3권 제1호, 2023.
- 이은미, 「역외자산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 _____,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조세학술논문집』, 제26집 제2호, 2010.
- 전우정·오성현·신은혜, 「가상자산·토큰증권의 담보권 설정 및 선의취득과 파산시 처리 -

- 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小考-,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1호, 2024.
- 정승영, 「가상자산의 이용과 조세 포탈에서의 적극적 은닉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조세법 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22.
- _____, 「OECD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 도입과 관련 쟁점에 관한 小考」, 『조세 학술논집』, 제40권 제1호, 2024.
- 천창민,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1호, 2022.
- Chainalysis, *The 2024 Crypto Crime Report*, 2024.
- FATF, *The FATF Recommendations*, 2023.
-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2016.
- OECD, *Bringing Tax Transparency to Crypto-Assets - An Update*, 2024.
- _____, *Delivering Tax Transparency to Crypto-Assets: A Step-by-Step Guid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2024.
- _____,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XML Schema: User Guide for Tax Administrations*, 2024.
- _____, *Flyer -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 _____,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3.
- _____,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Second Edition*, 2017.

_____,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2. 법령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미국 「미국연방규정집 31권」(Title 3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 「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일본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프랑스 「화폐및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프랑스 「조세기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EU Coucil Directive 2003/48/EC

3. 판례 및 결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4. 웹사이트

『경향신문』, 「가상자산 시장 규모 세계 3위인데…미루고 미룬 ‘과세’ 10년 뒤쳐져」, 2024. 9. 3.,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9030600025>, 검색일자: 2024. 11. 1.

금융정보분석원, <https://www.kofiu.go.kr>

『뉴스핌』, 「[정책의속살]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거래규모 절반은 ‘구멍’」, 2024. 6. 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12000309>, 검색일자: 2024. 11. 1.

『법률신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2.,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0046>, 검색일자: 2024. 11. 1.

『아시아경제』, 「룩셈부르크 은행비밀주의 철폐 동참」, 2013. 4. 12.,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206243129309>, 검색일자: 2024. 11. 1.

『연합뉴스』, 「EU, 룩셈부르크 등에 은행비밀주의 철폐 촉구」, 2013. 12. 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643348?sid=101>, 검색일자: 2024. 11. 1.

_____, 「EU-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철폐 합의…계좌정보 공유」, 2015. 5. 27., <https://www.yna.co.kr/view/AKR20150527199500098?input=1195m>, 검색일자: 2024. 11. 1.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미국의 해외계좌납세 순응법」,

2019. 6. 26.,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42/view.do?seq=1017359, 검색일자: 2024. 11. 1.

『한국일보』, 「코인 자금세탁·탈세 막는다... 국가 간 거래 상시 감시」, 2024. 10. 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514450000972>, 검색일자: 2024. 11. 1.

『Daum데일리안』, 「세계 가상자산 2143조원...역외 탈세 막으려면 ‘CARF’ [D:로그인]」, 2024. 10. 7., <https://v.daum.net/v/20241007070028522>, 검색일자: 2024. 11. 1.

Agencia Tributaria, “Automatic exchange of tax information with non-EU countries: a brief guide,” 2023. 10. 16.,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en_gb/normativa-criterios-interpretativos/analisis/2023/octubre/16/intercambio-automatico-informacion-fiscal-paises-guia.html, 검색일자: 2024. 11. 1.

AMF, “Legal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to security tokens and precisions on bulletin board,” <https://www.amf-france.org/en/news-publications/news/legal-analysis-application-financial-regulations-security-tokens-and-precisions-bulletin-board>, 검색일자: 2024. 11. 1.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b0324_projet-loi#_Toc179428414, 검색일자: 2024. 11. 1.

Blockpit, “Crypto Taxes France: Complete Tax Guide [2024],” <https://www.blockpit.io/tax-guides/crypto-tax-france>, 검색일자: 2024. 11. 1.

Bofip, “RES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 Champ d’application et territorialité - Qualification des opérations réalisées à l’aide de jetons non fongibles dits « NFT » au regard des règles de la TVA,” <https://bofip.impots.gouv.fr/bofip/14103-PGP.html/identifiant=BOI-RES-TVA-000140-20240214>, 검색일자:

2024. 11. 1.

Chainalysis, “How 2022’s Biggest Cryptocurrency Sanctions Designations Affected Crypto Crime,” <https://www.chainalysis.com/blog/how-2022-crypto-sanction-designations-affected-crypto-crime>, 검색일자: 2024. 11. 1.

e-Tax, <https://www.e-tax.nta.go.jp>

European Commissio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

EUR-Lex, <https://eur-lex.europa.eu>

European Court of Auditors, Audit preview: Exchange of tax information in the EU, p.5, https://www.eca.europa.eu/lists/ecadocuments/ap19_14/ap_tax_information.pdf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

EY Japan, https://www.ey.com/ja_jp

FCA, “Cryptoassets,” <https://www.fca.org.uk/firms/cryptoassets-information>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https://www.bmf.gv.at>

Forbes, “10 Best Cryptocurrencies To Invest In November 2024,” <https://www.forbes.com/advisor/in/investing/cryptocurrency/top-10-cryptocurrencies>

Gov.uk, <https://www.gov.uk>

HMRC,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

IBFD, <https://research.ibfd.org>

IDES, <https://www.ides-support.com>

IMPOTS, <https://www.impots.gouv.fr>

IRS, <https://www.irs.gov>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

Ministère de l'Économie, <https://www.economie.gouv.fr>

Morgan Lewis, “New IRS Guidance Provides a Spot of Certainty Amid Digital Asset Limbo,” 2024. 1. 18., <https://www.morganlewis.com/pubs/2024/01/new-irs-guidance-provides-a-spot-of-certainty-amid-digital-asset-limbo>

OECD, <https://www.oecd.org>

Orbitax, “OECD Announces that 31 Countries have Signed Multilateral Agreement for the Exchange of CbC Reports,” 2016. 1. 28., <https://orbitax.com/news/archive.php/OECD-Announces-that-31-Countri-20711>

Simmons-Simmons, “How France taxes cryptocurrency and NFTs,” <https://www.simmons-simmons.com/en/features/tax-on-cryptocurrency/clb0yenue0056tsrk3eyavwxi/how-france-taxes-cryptocurrency-nfts>

Taxbit, “UK Crypto Tax Guide,” <https://www.taxbit.com/blogs/uk-tax-guide/#:~:text=For%20tax%20year%20ending%20April,SA108%20Capital%20Gains%20Tax%20Summary>

The Banks,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2017. 11. 5., <https://thebanks.eu/articles/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on-financial-accounts>

Primetimes, <https://prtimes.jp>

QUE CHOISIR, <https://www.quechoisir.org>

Yahoo Japan News, <https://news.yahoo.co.jp>

日本銀行, <https://www.boj.or.jp>

国税庁, <https://www.nta.go.jp>

参議院, <https://www.sangiin.go.jp>

세정연구 24-05

암호화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연구

발행 2024년 12월 31일
저자 박주철·김재경·박하얀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쇄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ISBN 979-11-6655-338-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24-05

암호화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연구